

국민제안감사



# 감사 보고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국회감사요구

2025. 11.

감사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	5
III. 감사결과 .....	10
1. 감사결과 총괄 .....	10
2. 분야별 감사결과 .....	12
1.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비용 편법·위법 전용 의혹 관련 .....	12
2-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과업내용서 사전 유출 등 .....	40
2-나. 관리운영 대행용역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 논란 관련 .....	50
[ 별표 ] .....	64

## **표 목차**

[표 1] 용산 미군 부지 반환 현황 .....	6
[표 2] 2022년 용산공원 반환부지 관련 행사 등 용역계약 추진 현황 .....	7
[표 3] 2024년 용산공원 반환부지 관련 행사 등 용역계약 추진 현황 .....	8
[표 4] 사업별 내용 및 실적 비교 .....	9
[표 5] 지적사항 현황 .....	10
[표 6] 위수탁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상 세부사업 내용 .....	28
[표 7] 방안수립 용역 및 관리·운영 대행용역 계약 현황 .....	41
[표 8] 계약체결 등 이전에 <b>[기]</b> 에 요청한 과업 내용 .....	42
[표 9]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과업 현황 .....	46
[표 10]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입찰참가자격 제한 명세 .....	46
[표 11] 방안수립 용역 과업 중 미준공된 과업 .....	48
[표 12] 조경식재공사 이행 내역 .....	54
[표 13] 미승인 하도급 내역 .....	56
[표 14] <b>[기]</b> 와 연구원의 관리운영 대행용역 사후원가계산 용역 과정 .....	58
[표 15] 연구원이 노무비 산출을 위해 활용한 증빙자료 및 구성 항목의 적용여부 ..	60
[표 16] <b>[기]</b> 의 2차년도 당초 노무비와 정당 노무비 비교 명세 .....	61
[표 17] 관리운영 대행용역 수정원가계산 결과 및 과다 지급 금액 현황 .....	61

## **그림 목차**

[그림 1] 사업별 위치 .....	9
[그림 2] 2022. 5. 19.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 .....	14
[그림 3]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위치와 내용 .....	19
[그림 4]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초대장 .....	20
[그림 5]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모습 .....	20
[그림 6]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관련 내부 회의 보고자료 .....	22
[그림 7] 2022. 5. 19.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 .....	26

## **별표 목차**

[별표 1]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결과보고서 수정 전과 후 비교 .....	64
[별표 2] A-B 통화 녹취록(2022. 5. 27.) .....	68
[별표 3] C-B 통화 녹취록(2022. 5. 20.) .....	70
[별표 4] A-D 통화 녹취록(2022. 5. 18.) .....	72
[별표 5] A-B 통화 녹취록(2022. 5. 23.) .....	74
[별표 6] A-B 통화 녹취록(2022. 6. 3.) .....	76
[별표 7] A-D 통화 녹취록(2022. 6. 3.) .....	85
[별표 8] 1·2차년도 당초원가계산서 및 수정원가계산서 비교 .....	87
[별표 9] 2차년도 시설관리과업의 노무량 및 노임단가 산정 당초자료 및 수정자료 비교 .....	88

# I .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회는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으로 부담한 의혹과 용산어린이정원 위탁관리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2025. 1. 17.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 국회감사요구 내용

- (주문) 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에서 편법·위법 전용한 의혹과 ② 용산어린이정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 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
- (제안이유)
  - ① 2022년 6월 19일 대통령실은 주민 400여명을 초대하여 대통령실 이전기념 주민 초대 행사(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실시하였음. 그런데 국토부는 2022년 용산공원의 임시개방에 앞서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예산 중 일부로 “지역주민 어울림행사(가칭) 대행용역”을 발주함. 그런데 이 용역은 용산공원 개방행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최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위장용역임
    -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대통령실 자체 행사이며, 이것과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는 근접 장소일 뿐 전혀 관련 없는 행사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정한 사업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법하게 행사를 수행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대해 장관은 철저히 거짓말로 일관하여 위증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②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대행한 간접은 이 행사 이후 곧바로 2022. 7. 14.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공원 조성과 임시개방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산 공원 임시개방부지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이후 재차 2022. 8. 19.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수주하였음. 그런데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위탁은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진행된 의혹이 있음

- 1) 가가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과업지시가 결정되는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핵심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음
- 2) 가는 ‘행사대행’업체로 ‘관리운영 대행’을 하기에는 ‘시설관리’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2022. 8. 16. ‘사전 규격공고(자격)’가 나오자마자 이튿날인 8. 17. 법인 사업 목적에 “건물관리, 시설관리업”을 추가함. 그러나 자격을 입증할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함
- 3) 위 대행용역에 입찰한 1개 업체는 스스로 입찰을 포기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모르고 들어간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폭로한 바 있음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에서 편법·위법전용한 의혹과, ② 용산어린이정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 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련 의혹 등 2가지 사항을 감사중점으로 하였다.

“①항”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가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별개의 행사인지 관련성이 있는 행사인지(포함된 행사인지) 판단하기 위해, 2022년 당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최초 추진 경위, 행사업체 선정 과정, 행사 내용과 참가자 구성, 행사장소 및 일시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아울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와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의 목적 및 내용의 합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대통령 경호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의 및 추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사실관계에 따른 신분상 책임의 성립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국회 위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과 국토교통부 내부의 국정감사 대비 예상질의·답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관의 관련 발언 경위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실제 성격에 대한 사전  
인식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②항”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산어린이정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청으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에 부당한 이익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용역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특히 용역 발주 전 특정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정황, 업체 자격요건 변경, 계약 직전 법인 사업목적 추가의  
적정성 및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업체 수주를 유도한 행위가 있었  
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경쟁입찰 참여업체의 입찰 자진포기  
배경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빙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원은 2025. 1. 17. 국회감사요구 사항을 접수한 이후, 국회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 2025. 2. 11.부터 2. 26.까지 12일간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이어  
2025. 3. 5.부터 3. 25.까지 15일간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  
하였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 대통령경호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추진 경위 및 예산집행, 행사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령 적용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상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 및 법령 적용에 대한 이견 유무, 업무처리 경위,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확인된 주요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 결과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10. 2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 [범례]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 국토교통부: 국토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용산공원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주식회사 **가가**: **가가**      ▪ 주식회사 **가나**: **가나**      ▪ 주식회사 **가다**: **가다**
- 대통령실 지역주민 어울림행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sup>1)</sup>

### [주요 용어 설명]

-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임시개방에 앞서, 한시적으로 17일간 실시한 제한적 개방 행사
-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기념하여 인근 지역 주민 등을 대통령실 경내로 초대한 환영 행사
-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 미군기지 전체 반환 이전에, 일부 반환된 부지를 국민에게 계속 개방하는 사업

### 1.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등 수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03년 미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에 합의하였고, 국토부는 2005년 ‘용산 국가공원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국토부는 201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 계획’<sup>2)</sup>을 최초로 수립·고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을 추가로 수립·고시하였다.

1) 이 행사는 ‘대통령실 지역주민 어울림행사’라는 명칭으로 기획되었으나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 내부보고자료 및 국토부 ~~기획~~ 내부보고자료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함. 이후 두 명칭이 혼용되면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더 쉽게 와닿는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라는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채택함  
2) 종합기본계획은 이후 부지 추가 및 신규 편입 등을 사유로 2014년(1차), 2021년(2차), 2022년(3차), 2024년(4차)에 걸쳐 변경됨

## 2. 용산 미군 부지 반환 현황

[표 1]과 같이 1986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용산 미군 부지 중 일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었고, 2025년 7월 현재까지 전체 기지 면적 243만 m<sup>2</sup> 중 약 76.5만 m<sup>2</sup>(31.5%)가 반환되었다.

**[표 1] 용산 미군 부지 반환 현황**

(단위: m<sup>2</sup>)

연도	반환부지	면적
1986	미군 장교숙소 4·5·7단지 등 기지 일부 반환	13만
2020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 경기장 등 기지 일부 반환	5만
2022	미군 업무시설·장군숙소·병원·학교·도로 등 추가 반환	58.4만
2023	도로 등 추가 반환	890
합계	-	76.5만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 3.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및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 추진 현황

국토부 ~~가~~단은 2022년 2월 미군으로부터 장군숙소 부지 등을 반환받고, 같은 해 9월 예정된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sup>3)</sup>에 앞서 시범개방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LH는 국토부 ~~가~~단이 2022년 4월 용산공원 관련 공사비 등 기존 예산 중 29억 원을 LH(공원조성 사업시행자)의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한 예산을 활용해 [표 2]와 같이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 3. 14. 국토부는 ‘용산공원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일반경쟁 방식으로 ~~가~~단에 발주하였고, 해당 용역을 통해 같은 해

3) 그러나 실제로 임시개방은 토양오염 정화, 시설물 리모델링 정비 등 여러 문제로 연기되어 2023년 5월에 실시됨

6. 10.부터 6. 19.까지 시범개방행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LH는 같은 해 6. 20. 또다시 ④와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대행용역’ 긴급 수의계약을 맺어, 같은 해 6. 20.부터 6. 26.까지 추가 행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해 인근 주민 등을 초청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역시 같은 재원을 활용해 추진되었고, LH는 2022. 6. 17. ④와 긴급·보안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9. 해당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자, 2022년 7월 스마트시티사업 등 타 사업 예산 66억 원을 추가로 전용하여 LH에 배정하였다. LH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같은 해 7. 14. ④를 대상으로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관리운영 방안 수립용역’을 소액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고, 해당 용역은 같은 해 7. 15.부터 11. 30.까지 진행되었다. 위 용역이 진행되던 9. 26. LH는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④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해당 용역은 2022. 10. 11.부터 2024. 4. 30.까지 수행되는 사업으로 최종 준공금액은 약 89억 원에 달한다.

[표 2] 2022년 용산공원 반환부지 관련 행사 등 용역계약 추진 현황

(단위: 원)

구분	계약명	계약주체	상대방	계약일자	계약종류	행사/용역기간	최종 준공금액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용산공원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국토부	④	2022.3.14.	일반경쟁	2022.6.10. ~ 6.19.	839,200,000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대행용역	LH	④	2022.6.20.	수의계약 (긴급)	2022.6.20. ~ 6.26.	1,026,730,000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지역주민 어울림행사(가칭) 대행용역	LH	④	2022.6.17.	수의계약 (긴급/보안)	2022.6.19.	275,251,513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관리운영 방안 수립용역	LH	④	2022.7.14.	수의계약 (소액)	2022.7.15. ~ 11.30.	19,250,000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LH	④	2022.9.26.	제한경쟁 (1인 단독입찰 수의계약)	2022.10.11. ~2024.4.30.	8,942,284,947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LH는 2024년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을 위한 반환부지 임시 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세분화하여 [표 3]과 같이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운영대행용역과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유지관리용역으로 나누어 각각 분리 발주하였고, 전자는 **가가**를, 후자는 **가나**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해당 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3] 2024년 용산공원 반환부지 관련 행사 등 용역계약 추진 현황

(단위: 원)

구분	계약명	계약주체	상대방	계약일자	계약종류	용역기간	최종 준공금액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운영대행용역	LH	<b>가가</b>	2024.3.26.	일반경쟁	2024.4.1.~ 2025.5.16.	4,757,165,743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유지관리용역	LH	<b>가나</b>	2024.2.28.	일반경쟁	2024.3.1.~ 2025.3.31.	6,459,560,760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 개방사업의 내용 및 실적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먼저,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는 17일간 부분반환부지 내 약 10만  $m^2$ 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21,931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3,02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반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2022. 6. 19. 하루 동안 대통령실 경내에서 별도로 개최된 행사로, 참석자 수는 429명이었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의 경우, 장교숙소 5단지 약 5만  $m^2$ 는 2020년 7월부터 2025년 7월 현재까지 상시 개방 중이고, 2023년 5월부터는 장군숙소 부지 등을 리모델링한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  $m^2$ 가 추가로 개방되어 2025년 7월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29만 8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총 1,58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표 4] 사업별 내용 및 실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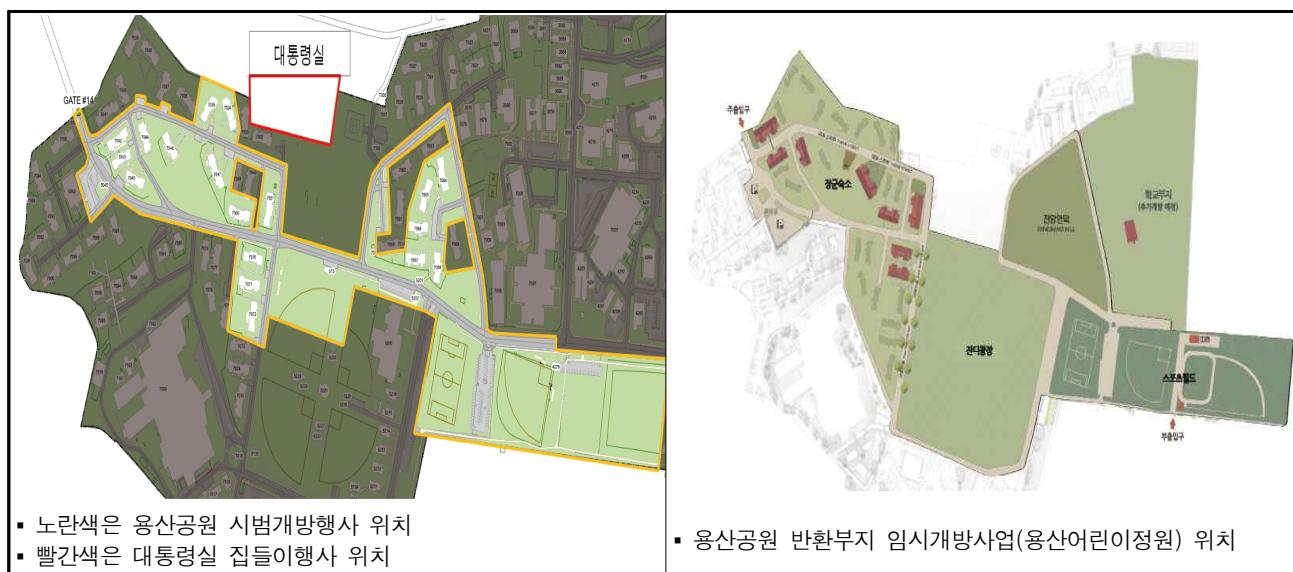
(단위: 일, m<sup>2</sup>, 명, 건)

구분	기간	개방구역	방문실적인원	국민의견수렴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17(2022.6.10. ~6.26.)	부분반환부지 중 약 10만	21,931	3,029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1(2022.6.19.)	대통령실 경내	429	-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	장교숙소5단지: 2020. 7월~현재	장교숙소5단지: 5만	2024.12월까지 약 83.5만	-
	용산어린이정원: 2023. 5월~현재	용산어린이정원: 30만	2024.12월까지 약 46.3만	2024.12월까지 1,587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위치는 [그림 1] 기준 좌측의 노란색과 빨간색 표시부분이며,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사업(용산어린이정원)의 위치는 [그림 1] 기준 우측 표시 구역이다.

[그림 1] 사업별 위치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 III.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5]와 같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5]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주의	통보	
			일반	시정완료
건수	13	5	6	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용 편법·위법 전용 의혹 관련

- 가. 해당 행사 주관기관, 행사 목적, 장소, 참여자,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행사는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별개의 행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그런데도 국토부 **개단**과 LH는 용산공원법에 따라 용산공원 임시개방사업을 위해 배정된 위·수탁사업비 예산으로 이 건 행사의 개최비용(2.75억원)을 **기기**에 지급
  - 나. 국토부장관은 국토부 **개단**의 ‘국토부 주관행사’라는 일관된 보고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았음

##### 2. 용산공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 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 가. LH는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66억여 원)의 입찰공고에 앞서, ‘관리운영방안 수립용역’(19백만 원)을 소액수의계약 방식으로 **기기**에 발주하면서 **기기**에 타 업체의 견적서까지 요구하여 그 계약금액을 결정하였고, 방안수립용역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후에 발주할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과업내용서를 **기기**에 사전 제공

- 또한, LH는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입찰공고 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

나. LH는 **기기**가 건물관리·시설관리업 자격을 입증할 만한 경력이 없음에도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의혹 및 입찰에 참가한 타업체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한 의혹은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다만, LH는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과업내용에 조경식재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관련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 그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기**가 상당수 과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실시하거나, 부적정한 원가정산을 통해 대금을 과다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앞으로 용역계약을 타 기관이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국토부장관 및 LH 사장에게 앞으로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을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며, LH 사장에게 임시 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입찰공고 전 **기기**에 과업내용서를 제공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요구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 2. 분야별 감사결과

1

###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비용 편법·위법 전용 의혹 관련

#### 1. 국회감사요구 내용

국회는 2022년 6월 19일 대통령실이 주민 400여명을 초대하여 대통령실 이전기념 주민 초대 행사(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실시하였는데 국토부는 2022년 용산공원의 임시개방에 앞서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예산 중 일부로 “지역주민 어울림행사(가칭) 대행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이 용역은 용산 공원 개방행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최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위장용역이고,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대통령실 자체 행사이며, 이것과 용산공원 시범 개방행사는 근접 장소일 뿐 전혀 관련 없는 행사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정한 사업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법하게 행사를 수행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대해 장관은 철저히 거짓말로 일관하여 위증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요구하였다.

#### 2. 감사결과

##### 가. 업무개요

국토부는 용산공원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군의 용산부지 중 용산공원조성지구로 지정·고시한 지구·지역에 용산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용산공원법 제15조,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국토부고시 제2020-285호) 및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국토부고시 제2022-313호) 등에 따라 LH를 용산 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및 반환부지 유지관리와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LH와 2022. 4. 26. “「용산공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의 임시개방 단계 역할 규정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변경)”(이하 “위수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sup>4)</sup> 이에 따라 LH는 국토부로부터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을 지급받아 용산공원 조성·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반환부지를 포함)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의 진행 경과

1) 대통령 경호처는 국토부, LH 등과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추가

경호처는 2022. 5. 11. 이전 경호처 내 임시조직인 ④단을 신설하고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받은 후 2022. 5. 11. 국토부 ④단, LH, ①② 관계자 등을 불러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에서 진행할 국민참여행사 프로그램 관련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④단에 ‘용산공원 시범 개방행사’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22. 5. 17. 경호처는 국토부 ④단, LH 등 용산공원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sup>5)</sup> 외에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준비를 요청하였다.<sup>6)</sup>

4) 국토부와 LH 간 최초의 이전 업무협약은 2020년 12월 체결됨

5) 국토부 ④단은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내용 중 국민 참여행사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산이 없자 이전에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2022. 3. 14.)하였던 ④단에 홍보용역 내용을 변경하여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를 맡기기로 하였음

▣단은 위 회의가 끝나고 경호처에 기존 국민소통용역계약을 체결<sup>7)</sup>한 □대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실을 전하며 다른 용역사를 구해야 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경호처는 □가에 연락하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호처는 2022. 5. 19. □를 대통령실 회의실에 불러 [그림 2]와 같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을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 [그림 2] 2022. 5. 19.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단과 LH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을 활용하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비용을 지급할 것을 협의

국토부 □단은 2022. 5. 17. 경호처로부터 용산구 거주 어린이 등 지역주민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하는 집들이행사를 준비하라는 요청은 받았으나, 대통령실

6) 경호처는 5. 17. 경호처 건물 9층에서 □단, LH 등과 함께 용산공원 시범개방 관련 회의를 하다가 “대통령이 용산에 오셨으니 지역주민들을 초청하는 컨셉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등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별도의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함

7) 2022. 3. 14. □단이 □대와 ‘용산공원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계약 체결

집들이행사 예산까지 마련하라는 요청은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가 위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 다른 용역사에 맡기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는, 같은 날 LH [라]단에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비용을 LH 위수탁협약 예산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LH는 다음 날인 18일 [가]단과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예상 금액 등을 논의하였다.

[가]단은 2022. 5. 20. 경호처에 예산은 있다고 한 후 같은 해 5. 23., 5. 27., 6. 3. 최소 세 차례에 걸쳐 LH에 대통령실 지시사항을 계속 전달하면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거나 행사비를 아끼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대통령실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하였다.

### 3) LH가 [가]에 2개 업체 명의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LH는 2022. 6. 3.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용역사로 [가]를 선정하기 위해 [가]에 추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업체 명의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가]와 파트너사인 주식회사 [가]는 이 사실을 논의한 후 같은 해 6. 9. 각각 견적금액 284,800,000원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LH는 [가]에게만 이미 낸 추정가격보다 최소한 같거나 낮은 금액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여, 2022. 6. 10. [가]로부터 200,000원 낮은 284,600,000원으로 적힌 견적서를 받아 이미 [가]를 행사업체로 선정한 상태에서 복수 업체의 가격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하고는, 최저가 견적금액 및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가]로 선정하였다.

LH는 2022. 8. 26. [가]에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비용 275,251,513원을 [가]단과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받은 용산공원 부분반환 부지조성 예산에서 지급하였다.

#### 4) LH는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결과보고서를 수정

LH는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이후인 2022. 7. 6. [기기]로부터 이 건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본 후 [기기]에 결과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직접 요청하였고, [기기]가 최소 네 차례<sup>8)</sup>에 걸쳐 [별표 1]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결과보고서 수정 전과 후 비교”와 같이 행사명<sup>9)</sup> 및 대통령 호칭<sup>10)</sup>을 수정하거나, 장소<sup>11)</sup>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고, 대통령실 관련 홍보 기사 및 사진 속 내용 등을 삭제하였다.

#### 다. 이 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성격에 대한 판단

이 건에 대한 국회감사요구의 핵심 쟁점은 국토부(LH)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정해진 목적 외 용도인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에 사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따라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가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또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1) 양 행사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정황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①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최를 요청한 점, ② 대통령실이 용산공원 부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점, ③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동일한 시기에 개최된 점, 그리고 ④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준비과정에서 일부 대통령실 협조 사항이 논의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양 행사가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8) 2022. 8. 4. 14:24, 8. 5. 22:27, 8. 8. 13:58 및 14:34 매일로 결과보고서 수정본을 제출

9)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온 대통령입니다’에서 ‘지역주민 어울림행사’로 변경

10) ‘VIP’에서 ‘주요 내빈’으로 변경

11)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용산공원 시범개방부지 일원’, ‘용산공원 잔디마당’, ‘잔디마당’으로 변경.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용산공원법상 ‘용산공원’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개최를 요청**

경호처는 2022. 5. 11. 육군회관으로 **agan**, LH, **kgk** 관계자 등을 불러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에서 진행할 국민 참여행사 프로그램 관련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gan**에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청<sup>12)</sup>하였다. 이후 2022. 5. 15. 및 5. 17.에 시범개방행사 관련 추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개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행사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② 용산공원과 대통령실의 지리적 인접성**

용산공원법 제3조에 따르면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실의 위치는 이에 인접한 구 국방부 청사부지를 말한다. 법령상 대통령실은 용산공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

## **③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개최 시기**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는 2022. 6. 10.부터 같은 달 26일 19:00까지 진행되었으나 1차 행사는 마지막 날인 2022. 6. 19. 원래 19:00까지 진행 예정이던 프로그램을 15:00에 종료하여 행사참여자 전원 퇴장시키고, 16:00부터 18:00 까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양 행사는 일부 시간대에서 단절되어 별도로 진행되었으나, 동일한 기간·공간을 연속적으로 활용한 만큼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인접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

12) 회의가 종료된 후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관이 B에게 요청

#### ④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콘텐츠에 대통령실 협조가 필요했던 점

2022. 5. 11.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1차 회의에서 시범개방행사 콘텐츠 중 하나로 대통령실 경내 투어 프로그램이 제안되었고, 이후 조정 과정을 거쳐 시범개방행사 방문객 중 선착순으로 대통령실 앞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반영되었다. 대통령실 앞뜰 및 경내는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구역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콘텐츠였다는 점에서 양 행사 간 일정 수준의 연계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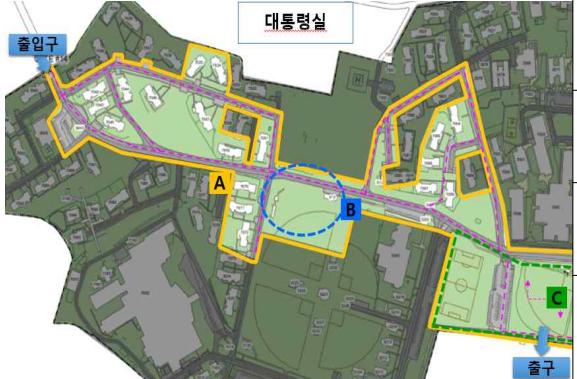
#### 2) 양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이와 관련하여 ① 행사목적과 내용, ② 행사장소 및 기관참여자, ③ 이 건 행사의 주관기관, ④ 행사 당시 관련자의 인식 등 실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감사기간 중 조사한 결과, ① 행사목적과 내용은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하여 지역주민 등을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을 주제로 집들이 겸 환영 인사를 하는 것이었고, ② 행사장소 또한 용산공원법상 미군 반환부지가 아닌 대통령실 경내 잔디마당이었으며, 기관참여자 역시 대통령, 경호처장, 관리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었고, 국토부 또는 LH의 장·간부·실무자 등은 참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③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주관기관은 대통령경호처였고, ④ 당시 대통령실·~~국~~단·LH 관련자들도 양 행사가 별개의 행사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주체·목적·장소·구성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 연계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 ① 행사목적과 내용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는 미군기지 반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2년 9월 예정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확대에 앞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향후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계획에 반영될 예정인데, 행사 내용은 [그림 3]과 같이 용산공원 4개 구역에서 진행되며, 각 구역별 홍보 및 안내프로그램을 통해 공원 조성과 활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위치와 내용

	<p><b>(입구) 국민이 열다</b> ⇒ 용산공원에 국민을 맞이하는 오프닝</p> <p><b>(A구역) 국민과 걷다</b> ⇒ 지점별 안내 및 해설 산책, 사진 전시 등</p> <p><b>(B구역) 국민과 만나다</b> ⇒ 전망대, 바람개비 포토존, 음료 등</p> <p><b>(C구역) 국민이 만든다</b> ⇒ 각종 이벤트·행사가 열리는 체험·참여 공간</p>
--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대통령 집무실 등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후 인근 주민들을 초청하여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행사 내용은 [그림 4]와 같이 초대장에 ‘대통령의 이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주요 프로그램은 의장대 공연, 현악 4중주 및 팝페라 테너 공연,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어린이 그림 전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에게 제공된 기념품에도 “안녕하세요? 새로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등, 행사 전반에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하는 내용에 한정되어 있었다.

#### [그림 4]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초대장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림 5]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모습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에서 나눠준 기념품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② 행사 장소 및 기관참여자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는 용산공원법에 따른 용산부지, 용산공원시설 및 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었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및 LH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하여 행사를 운영하고 관리하였다. 반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용산공원법상 해당 구역이 아닌 ‘대통령실 경내’<sup>13)</sup>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에 국토부 및 LH 관계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

## ③ 행사 주관기관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는 국토부 ④단이 주관하였으나,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하는 별개의 행사로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었다.

Q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마련할 것을 지시(정확한 날짜 모름) 한 후, 2022. 5. 17. 대통령실은 ④단과 LH 관계자를 경호처로 불러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는 별개로 이 건 행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④단이 기존 국민소통용역을 체결<sup>14)</sup>한 ④단이 이 건 행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④단 측에 행사 기획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13) ‘대통령실 경내’란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비서실 등 부속건물과 마당 등 그 인접 구역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구역임

14) 2022. 3. 14. ④단이 ④단과 ‘용산공원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계약 체결

대통령실은 2022. 5. 19. [기자회견]로 하여금 경호처장에게 행사 기획안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국토부나 LH 관여 없이 [기자회견]로부터 행사 기획안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수정·보완을 요청하였다.

또한,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보도자료는 [기자회견]이 직접 작성·배포한 반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보도자료는 대통령실(대변인실)이 작성·배포하였다.

#### ④ 대통령실 내부문건 및 관련자의 대화 내용

대통령실은 [그림 6]과 같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비서관 회의 자료에서 이 건 행사를 명확히 “대통령실 이전기념 (집들이)”로 명시하였고, 행사명 또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로 표현하였다.

[그림 6]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관련 내부 회의 보고자료

The document features a blue header bar with the title. Below it is a large graphic with Korean text: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two sections: "□ 추진 배경" and "□ 행사 계획(안)".

**□ 추진 배경**

-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생활에 변화를 겪는 지역주민을 초청,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 이미지 및 메시지 전달
-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초청, 대통령 집무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행사 계획(안)**

- (행사명)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
- (일 시) 2022. 6. 19.(일) / 오후 4시~오후 6시
- (장 소)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기자회견]과 LH는 2022. 5. 27.의 대화에서 LH가 VIP 행사 관련 의견 제시와

대통령실 회의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자, **▣**단은 돈 계산만 하고 회의에 안 갈 것이냐고 반문한 적이 있고, 2022. 6. 3. **▣**단은 LH가 시범개방행사와 VIP 행사는 전혀 별개의 행사이므로 이 건 행사의 예산집행 근거가 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적이 있다.

### 3) 종합판단

양 행사는 시기·공간상 일부 겹치고 대통령실 협조가 필요했던 점은 있으나 주관기관, 행사 목적, 장소, 참여자, 운영 방식 등 실질적 요소가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별개의 행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추진과정에서 경호처, **▣**단, LH의 행위

#### 1) 경호처 비공식 임시조직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준비하고 비용은 미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16조 제1항 및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직무 범위의 한계로 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의 장은 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을 운영할 때 기존 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임시조직의 부서장은 4·5급 인력(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sup>15)</sup>으로 하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위 직제 제8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경호처의 정원은 공무원(특정직, 일반직 등)으로

15) 별도정원이 배정된 경우 등에는 제외되나 별도정원도 공무원만 해당

만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용역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면 아니 된다.

따라서 경호처는 임시조직을 신설할 때 대통령 등 경호업무 외의 업무를 포함하거나, 임시조직의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추진하였다면 그비용은 경호처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경호처장 R은 2022. 5. 11. 이전(정확한 날짜 모름) 경호처 내 비공식 임시 조직인 **내단**을 신설하면서 대통령 경호업무 범위를 벗어난 ‘용산공원 홍보’ 등의 업무를 포함하였다.<sup>16)</sup> R의 육군사관학교 동기(38기)인 E가 정년(60세)을 넘어 경호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자 공무원<sup>17)</sup>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sup>18)</sup> 임의로<sup>19)</sup> **내단** 단장에 임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직제 및 인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R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Q의 지시를 받은 뒤(정확한 날짜 모름)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E는 2022. 5. 11. 육군회관으로 **기단**, LH **내단**, **기기** 관계자 등을 불러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에서

16) R은 본인이 경호처 **내실장(F)**에게 **내단** 신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임시조직으로 만들면 된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

17)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고, 정년에 이르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8) 2022. 6. 1. 경호처는 E와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를 하부조직(임시조직)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음

19) R은 경호처 **내실장(F)**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내단** 단장으로 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

진행할 국민 참여행사 프로그램 관련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실<sup>20)</sup>은 [redacted]단에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청<sup>21)</sup>하였다. 경호처 [redacted]단 사무관 C는 2022. 5. 17. 국토부 [redacted]과장 B, LH [redacted]부장 A 등 용산공원사업의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준비까지 요청하였다.<sup>22)</sup>

B는 위 회의 이후 C에게 기존 국민소통용역계약을 체결<sup>23)</sup>한 [redacted]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실을 전하며 다른 용역사를 구해야 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C는 [redacted] 팀장 G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sup>24)</sup>

C는 2022. 5. 19. [redacted] 팀장 G를 대통령실 회의실에 불러 [그림 7]과 같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을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redacted] 소장 H를 경호처장 R에게 안내하였고 H는 R에게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을 보고하였다.

---

20) [redacted] 소속 행정관 I

21) 회의가 종료된 후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관이 B에게 요청

22) C는 5. 17. 경호처 건물 9층에서 B와 A, J([redacted] 대표)와 함께 용산공원 시범개방 관련 회의를 하다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함

23) 2022. 3. 14. [redacted]와 ‘용산공원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계약 체결

24) C는 [redacted]를 추천한 것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아니며, 본인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계획수립, 예산 확보, 업체 선정, 예산 집행 등 어느 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자 [redacted] B, LH A, 경호처 K, 대통령비서실 I, [redacted] G 등 C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C가 주도하였다고 진술

[그림 7] 2022. 5. 19.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기획안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C는 2022. 5. 20. [별표 3] “C-B 통화 녹취록(2022. 5. 20.)”과 같이 B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가 사실상 **▣단** 주도로 기획·운영되는 대통령실 행사임을 밝혔다. 그런데 B가 **▣단** 예산으로 행사비를 충당할 의사를 밝히자, C는 이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C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로부터 행사 기획안을 보고받고 수정 사항을 요구하면서 ‘모종 심기’ 프로그램(총 2,686,156원 소요)을 본인이 직접 제안하여 행사 내용에 포함한 뒤, 행사 당일인 2022. 6. 19. 참석자들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단**’이라고 적힌 라벨을 화분에 붙여서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행사 종료 이후 C는 해당 화분을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sup>25)</sup>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등 행사비는 **▣단** 내지는 LH가 납부하도록 하면서 위 행사가 본인의 실적인 것처럼 홍보하였다.

#### 다) 관련자 책임에 대한 판단

경호처장 R이 경호처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단**을 경호처 내 임시조직으로

25) ‘모종 심기’ 프로그램에 소요된 예산은 2,667,000원이었으나, C가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준 화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움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E를 **▣**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부조직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R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추진하도록 지시한 점은 확인되나, R 등이 **▣**단 및 LH가 반환부지 조성 예산으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비를 집행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또한, C는 2022. 5. 20. B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용산공원 시범 개방행사의 사이드 이벤트라고 발언하는 등 법령 위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6)</sup>

## 2) **▣**단의 요청에 따라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비를 집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LH는 2022. 4. 26. **▣**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900,000,000원을 협약 금액으로 받았는데, 위수탁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LH는 **▣**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표 6]과 같이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세부사업 내용은 용산공원법에 따른 용산공원 부분반환 및 반환 예정 부지<sup>27)</sup>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26) R, E, C 모두 현재 퇴직한 상태이므로 개인 책임을 묻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임

[표 6] 위수탁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상 세부사업 내용

<b>(1) 부분반환 및 반환예정 부지 현황 상세조사</b>
- 부분반환 부지는 측량 등 현장조사 후, 전산적 방법(CAD)을 통해 도면 마련
- 반환예정 부지는 토양안전성 분석 및 예방조치 방안 수립
<b>(2) 부분반환 및 반환예정 부지 활용방안 수립</b>
- 시설·건축물 리모델링 및 이용객 동선 등 반환부지 활용방안 마련
<b>(3) 부분반환 부지 내 시설·건축물 및 관련 기반시설 정비 공사</b>
- 반환부지 내 시설·건축물 등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상하수도, 전기·통신, 접근도로, 펜스 등 기반시설 정비 설계 및 공사
- 용역·공사 발주, 계약, 공정관리, 대금지급 등 진행상황 관리·감독
<b>(4)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영</b>
- 점검·정비·유지보수 등 기반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 출입차량 통제·순찰 등 경비, 청소, 조경관리 등 운영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토부 ④단이 용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지구사업 시행자인 LH가 용산공원법에 따른 용산공원 부분반환 및 반환예정부지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위탁받은 예산에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와 같은 용산 공원 조성 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H 역시 ④단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더라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수립된 사업수행계획서상 세부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국토부 ④단 B는 2022. 5. 17. 경호처 C로부터 용산구 거주 어린이 등 지역 주민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하는 집들이행사를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고는 같은 날 ④단 단장 L에게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마련하라는 사실을

27) 용산공원법 제20조의2 등에 따르면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를 말함

들었는데 [기타]가 위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 다른 용역사에 맡기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L은 2022. 5. 17. LH [기타]단장 M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비용을 LH 위수탁협약 예산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하고는 B에게 “LH M 단장이 도와 준다고 하니 협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B는 M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예산 협조를 부탁하였다.

M은 2022. 5. 17. 위와 같이 L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자 LH A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A는 다음 날인 18일 [기타]반과장(비공식 직제) D에게 전화하여 [별표 4] “A-D 통화 녹취록(2022. 5. 18.)”과 같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예상 금액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B는 2022. 5. 19.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컨셉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Q입니다”이고, 당일 [기타]가 직접 행사기획안을 R에게 별도 보고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L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B는 2022. 5. 20. C가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니 [기타]단이 할 것은 없다고 말하자 [기타]단 예산으로 행사비를 충당할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B는 [별표 5] “A-B 통화 녹취록(2022. 5. 23.)”과 같이 A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예상 금액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행사비는 LH가 알아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에 신경 쓸 것을 A에게 전달하였으며, [별표 2] “A-B 통화 녹취록(2022. 5. 27.)”과 같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관련 경호처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여 의사를 물으면서 부담스럽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A에게 본인이 참석한 후 대통령실 지시사항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별표

6] “A-B 통화 녹취록(2022. 6. 3.)”과 같이 A가 **▣**가 제출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용역비가 예상치를 넘는다고 하자, 경호처에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용역비를 아끼지 말라고 했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또한, B는 2022. 6. 3. A가 공식적인 지시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건 행사비 대납을 공식 요청하는 것은 회피하였다. 이에 A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지만, B는 공식적인 지시 요청을 재차 거부하였다.

이에 A는 **▣**단 **▣**과장(비공식 직제) D에게 [별표 7] “A-D 통화 녹취록 (2022. 6. 3.)”과 같이 공문 초안까지 만들어 주면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용역계약 근거 공문을 요청하였으나, D는 공문 발송을 회피하다가 3일 뒤인 2022. 6. 6.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후임자인 N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한편, N은 2022. 6. 7. **▣**단 **▣**과장으로 부임한 당일 B로부터 대통령실 회의에 다녀왔는데 LH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이야기 잘해서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통령실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한 상태에서 A로부터 해당 행사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공문이 필요한데 **▣**과장인 B 및 전임자인 D와 이미 협의가 되었으며, B가 **▣**과와 이야기하라고 했다며 공문을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N은 당시에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의 내용과 성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사에 대해 왜 별도의 공문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고민해보겠다고만 답변하였으나, L이 집들이행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라는 지시를 하자,<sup>28)</sup> 여전히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에

---

28) L은 위 공문에 대하여 N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억도 없고, 공문의 ‘추가행사 지원’이라는 문구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답변

대한 성격은 알지 못한 채 2022. 6. 9. “추가행사 요청”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이 건 행사의 근거 공문을 LH에 발송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LH는 2022. 6. 10. 수의계약 대상자를 **[ ]**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 어울림행사(가칭) 대행용역』 시행” 공문을 작성<sup>29)</sup>하여 결재를 받아서, 같은 달 19일 **[ ]**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 26. **[ ]**에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비용 275,251,513원을 **[ ]**단과 맷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받은 용산공원 부분반환 부지조성 예산에서 지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주재한 회의에 B가 참석하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관련 요청사항을 듣고는 L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L이 M과 예산집행 협의를 한 뒤 B에게 LH 예산을 활용하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자 B가 A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비를 용산공원 조성비로 집행하도록 경호처의 요청사항 등을 A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LH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 ]**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시를 받아 **[ ]**단과 맷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받은 용산공원 부분반환 부지조성 예산으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비를 집행하였다.

#### 다) 관련자 책임에 대한 판단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목적, 내용, 장소, 기관참여자, 주관기관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별개의 행사로 판단되므로 LH가 위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

29) 기안은 O가 하였으나, O는 P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공문만 기안하였음

다만, 양 행사 간의 장소적·시기적 인접성, 시범개방행사 콘텐츠에 대통령실 앞뜰방문 프로그램이 포함된 점, 시범개방행사 기획 과정에서 집들이행사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관련자들이 법령 위반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국토부장관의 위증죄 성립에 대한 판단

##### 1) 사건개요

국토부장관 S는 2024. 10. 7. 국토부 국정감사(이하 “1차 국감”이라 한다) 및 같은 해 10. 24.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이하 “2차 국감”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건 행사는 대통령실 집들이행사가 아니라 용산공원 시범 개방행사의 일환으로 국토부(LH) 주관행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2) 국토부장관의 2024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이라 한다) 위증 여부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선서한 증인이, ② 위증의 고의로, ③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해야 하므로, 설령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sup>30)</sup>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가 국토부 주관행사라는 국토부장관 S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지만,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진

30)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됨(대법원 1982.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1차 국감 대비 보고 및 국감 진술

국토부 간단은 ‘이 건 행사를 LH가 수행한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예상답변을 작성하여 2024. 10. 06:30 쟈실장에게 보고하였고, 쟈실장은 같은 날 07:00 동일한 내용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국토부장관은 같은 날 10:11부터 23:48까지 1차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건 행사는 국토부(LH) 주관행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2차 국감 대비 보고 및 국감 진술

국토부 간단은 1차 국감 때와 동일한 취지로 ‘이 건 행사는 국토부 행사이고,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더불어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예상답변을 작성하여 2024. 10. 24. 06:30 쟈실장에게 보고하였고, 쟈실장은 같은 날 07:00 동일한 내용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국토부장관은 같은 날 10:06부터 10. 25. 00:54까지 2차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건 행사는 국토부(LH) 주관행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국토부장관 진술의 위증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S 국토부장관의 이 건 진술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S 장관은 2023. 12. 26. T 전 국토부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하여 2022년 이 건 행사 당시에는 국토부나 LH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② 1차 국감 개시 전 국토부가 입수한 총 176건의 질의서에 대해 국감 당일인 2024. 10. 07:00부터 09:00까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총 374건의 예상질의답변서를, 2차 국감 개시 전 입수된 총 145건의 질의서에 대해서도 국감 당일인

2024. 10. 24. 07:00부터 09:20까지 총 305건의 예상질의답변서를 각각 보고받는 등 개별 질의서에 대한 보고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③ 보고받은 예상질의답변서 외에 추가적인 구두설명이나 별도의 자료 보고는 없었고, 실무진 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나 수정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S 장관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1.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가. 경호처

경호처는 ① □단이 용산공원 시범개방 지역에 대한 경비안전 대책수립 및 개방준비 등 용산 경호구역과 관련한 경호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신설·운영한 임시조직에 해당하고, 임시조직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 등의 적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호처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 부처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E를 □단 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E가 인수위 당시 ‘청와대 이전 TF’에서 대통령실 시설관련 업무 및 주한미군기지 부지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이며, 기간제근로자로서 적법한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에서 대통령실 경내도 일부 개방한 점, 집들이행사를 용산 공원 시범개방행사 마지막 날에 실시한 점, 경호처 구성원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단이 ‘임시조직’을 설립하여 용산공원 시범개방 지역에 대한 경비안전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용산공원 홍보를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시 조직’은 ‘하부조직형 임시조직’과 ‘다수부처 협업형 임시조직’ 중 하나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하부 조직’은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경호처장 R의 지시로 만들어진 □단은 경호차장 소속의 하부조직이었으므로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부서장을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했다. 이처럼 법령의 특례나 예외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공무원이 아닌 E를 □단 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공직 인사 및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②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기획 초기단계부터 명칭, 목적, 주요 초청 대상, 프로그램 내용, 참여 기관, 행사 준비 주체 등 여러 실질적인 요소에서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별개의 행사로 기획·추진되었으므로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의 본래 목적(공원 일부 구역 개방 및 시민 체험 제공 등)과는 구분된다. 또한, 이 당시 위 행사 관계자였던 경호처 □단 단장조차도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현 경호처가 위 행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당시 경호처 관계자의 주장에 반하여 규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나.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은 국토부가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의 콘텐츠 중 하나로 대통령 집무실 투어 등을 준비하였으나 이를 대신하여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진행한 것이고, 위 행사 진행 당일 퇴장할 때 참석자들이 용산공원을 산책하면서 퇴장하도록 동선을 짰으므로 용산공원 홍보의 효과도 있었던 등 위 행사는 용산 공원 시범개방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건 대통령 집무실 투어를 당초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콘텐츠 중 하나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실질적인 행사 내용과 목적이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행사기획 및 운영 주체도 경호처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다. 또한, 이 건 행사 집결지를 행사 공간 확보 및 이동 동선의 편의 차원에서 용산공원 주차장으로 선정함에 따라 행사 종료 후 일부 참석자가 용산공원 구역을 통과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뿐이다. 더욱이 이 행사는 위 경호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같이 여러 실질적인 요소에서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와 별개의 행사로 기획·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사는 용산공원 사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다. 국토부

##### 1)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련

국토부 ~~국~~단은 용산공원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이 당시

(2022. 6. 3.)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자료에 대통령실 집들이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이 건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경위와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전반의 준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대통령실 집들이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관련되는 행사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위 보고서의 “참고 1. 시범 개방 행사 세부내용”에는 대통령실 집들이행사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 2) 국감 위증 관련

국토부장관은 2024년 국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2022년 이 건 행사 당시 국토부나 LH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이 건 행사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었고, 국감 개최 당일인 2024. 10. 7. **▣**단에서 작성한 예상질의답변서를 보고받으면서 처음 인지하였으며, 보고받은 내용대로 국감장에서 진술하였을 뿐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국감 준비를 하면서 예상질의답변을 작성할 때에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작성한 후 내부보고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라. LH

LH는 ① 당시 담당자들이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용역이나 행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일 뿐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무관한 행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단이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를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하고, 위수탁협약서를 근거로 LH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므로 LH가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당시 **▣**단 단장 L을 비롯한 **▣**단 관계자들과 LH **▣**단 단장 M을 비롯한 LH **▣**단 관계자들은 당시에도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와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가 관련성이 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② 위수탁협약서에는 LH가 **▣**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용산공원법 제15조상의 조성지구사업 범위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대통령실 집들이행사와 같은 성격의 행사나 대통령실 홍보성 이벤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수탁협약에 따라 LH가 집행하는 예산은 용산공원 조성 및 시범개방 등 특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법령상 정해진 예산으로, **▣**단 관계자의 형식적 지시만으로 예산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조치할 사항

### 대통령경호처장은

- ① 앞으로 임시조직을 신설하여 용산공원 홍보 등 대통령경호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포함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해당 조직의 장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직제·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용역계약 등을 타 기관이 체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용산공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의 임시개방 단계 역할 규정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  
니다.(통보)

## 2

## 용산공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 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 2-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과업내용서 사전 유출 등

#### 1. 국회감사요구 내용

국회는 [기기]가 용산공원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과업지시가 결정되는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핵심적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감사요구하였다.

#### 2. 감사결과

##### 가. 사건개요

LH는 용산공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20년 12월 국토부와 체결한 “『용산공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의 임시개방 단계 역할 규정을 위한 업무협약”<sup>31)</sup>에 따라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임시개방을 위한 관리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LH는 2022. 7. 14. [표 7]과 같이 용산공원 반환부지 활용계획(안)<sup>32)</sup>을 바탕으로 임시개방 부지 및 시설들에 대해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관리운영 방안 수립용역”(이하 “방안수립 용역”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기기]와 소액수의 계약<sup>33)</sup>을 체결하였다.

이후 LH는 2022. 8. 16. 2022년 9월 말부터 용산공원 중 임시개방하기로 한 부지(장군숙소, 스포츠필드 및 남측부지 등 약 27만 m<sup>2</sup>)의 관리운영을 위해 “반환

31) 용산공원 임시개방사업의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여 국토부는 임시개방 관리운영의 계획을 수립하고, LH는 임시개방 수행계획에 따른 시설공사 및 관리운영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협약

32) LH는 2022년 5월, 용산공원 반환부지를 여가·휴식 및 국민소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33) 「수의계약 업무지침」(LH 내규) 1.5.2에 따르면 소액수의계약 대상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임

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이하 “관리운영 대행용역”이라 한다) 수행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19.<sup>34)</sup> 제한경쟁입찰, 공동수급 방식으로 긴급입찰공고<sup>35)</sup>를 하였으나, ~~가가~~만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표 7]과 같이 같은 해 9. 26. 재공고 없이<sup>36)</sup> 수의계약(총계약금액: 6,632,502,268원)을 체결하였다.

**[표 7] 방안수립 용역 및 관리운영 대행용역 계약 현황**

(단위: 원)

구분	방안수립 용역		관리운영 대행용역
계약상대방	<del>가가</del>		가가 및 <del>가나</del>
낙찰자 선정방식	(소액)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1인 입찰로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체결)
용역기간	2022. 7. 15.~2022. 11. 30.		2022. 10. 11.~2024. 4. 30.
계약	일자	2022. 7. 14.	2022. 9. 26.
	금액	20,900,000	6,632,502,268
(사후원가) 정산	일자	2022. 12. 15.	2024. 5. 24.
	금액	19,250,000	8,942,284,947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 나. 방안수립 용역 수행업체를 내정하여 2인 비교견적을 모두 요구

###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의계약 업무지침」(LH 내규) 2.1.과 6.3. 및 「견적가격 업무처리 지침」(LH 내규) “2.2. 견적서 제출 업체수”, “2.1. 견적서의 제출 가.”에 따르면 견적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제출받아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원칙<sup>37)</sup>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업체에

계약명	입찰공고일	입찰서 제출		개찰일
		개시일	마감일	
34) 관리운영 대행용역	2022. 8. 19.	2022. 8. 25.	2022. 8. 30.	2022. 9. 5.

3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2. 7. 1.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2022년 12월까지)을 정하여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6호)한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정가격 결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의뢰할 때에는 업체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적서 제출을 각 업체에 개별적으로 의뢰하여 서로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없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LH는 업체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2인 견적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전에 특정업체를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까지 함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LH [본부] 팀 차장 U는 2021. 2. 4.부터 2023. 2. 15.까지 [본부] 부 차장으로 용산공원 임시개방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장 A와 함께 2022년 6월경 이 건 계약방식을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으면서도, 2인 견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표 8]과 같이 사전에 [가]에 방안수립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8] 계약체결 등 이전에 [가]에 요청한 과업 내용

날짜	요청 내용	수령일	수단
2022. 6. 27.	용산공원의 임시개방시 필요 인력을 산출해 달라고 요청	6. 27.	이메일
2022. 7. 1.	방안수립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참고하라고 [가]에 용산공원 부분개방 활용방안 및 활용계획을 이메일로 송부	-	
2022. 7. 5.	[가]에 방안수립 용역의 과업 중 하나인 용산공원 수익시설 운영 및 수익처리 방안 등 세부과업에 대한 검토를 요청	7. 7.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U는 [가]에 방안수립 용역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여 주식회사 [가]를 알게 되었고, 2022. 7. 11. [가]에 [가]의 견적서까지 함께 제출하되 견적가격을 조정하여 [가]의 견적가격(22,000,000

37)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 시설물의 구조적 균열, 누수 등의 하자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와 기타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1인 견적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나 대통령실 집들이행사는 '공사'도 아니고, 1인 견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이 **▣**의 견적가격(20,900,000원)보다 높게 작성되도록 요구하였다.<sup>38)</sup>

이후 U는 2022. 7. 14. 2인 견적을 통해 방안수립 용역의 계약상대방으로 **▣**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래**단장 M에게 보고한 후 같은 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외형상으로는 2인 견적 방식이나, 실제로는 **▣**에 유리하도록 사전에 견적가격이 조정되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 다. 관리운영 대행용역 입찰공고 전 입찰정보 사전 제공

#####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 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령이 정한 기관<sup>39)</sup>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직원행동강령」(LH 내규) 제21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고, LH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LH는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계산 업무를 전문기관에 직접 용역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38) A의 진술을 종합하면 **▣**에 2인 견적을 요청한 것은 U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임

3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원가계산용역기관은 1. 정관 또는 학회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방안수립 용역의 과업에 포함시켜 [가][가]가 원가계산 전문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가]가 향후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이므로 방안수립 용역의 과업에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원가산정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공고 전에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과업내용서(안) 등 입찰 관련 정보를 [가][가]에 제공하는 것은 [가][가]가 사전에 주요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U는 2022. 7. 14. 방안수립 용역의 과업내용서에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업무를 포함하여 [가][가]와 수의계약 체결 후, [가][가]가 그 원가계산을 위해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과업내용서(안)<sup>40)</sup>을 요구하자 방안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가][가]가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받을 가능성을 미쳐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2022. 8. 4. 13:52경 [가][가] 소속 팀장 G에게 과업내용서(안)을 이메일로 송부하는<sup>41)</sup> 등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입찰공고일(2022. 8. 19.)보다 15일 앞서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과업내용서(안)을 [가][가]에 제공<sup>42)</sup>하였다.<sup>43)</sup>

40) LH 담당자가 2022. 8. 4. [가][가]에 이메일로 송부한 관리운영 대행용역 과업내용서(안)과 같은 해 8. 19. 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최종 과업내용서를 비교한 결과, 삽화 및 일부 문구 등에 경미한 차이는 있었으나 과업내용 등 주요사항에는 차이가 없었음

41) 상급자인 부장 A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방안수립 용역의 과업내용서에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원가 산정업무를 포함한 것과 [가][가]에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과업내용서를 송부한 것은 U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임

42) LH는 2022. 8. 4. [가][가]에 관리운영 대행용역 과업내용서(안)을 송부하기 이전부터(구체적인 논의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과업과 관련하여 [가][가]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관련 내용을 논의한 사실이 있음

43) 실제로 해당 용역은 긴급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입찰공고일(2022. 8. 19.)부터 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2022. 8. 30.) 까지의 기간이 11일(일반적인 입찰의 경우 40일)로 현저히 짧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가]가 방안수립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성과물 일부를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입찰제안서에 활용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

## 라. 추가확인사항

### 1) 법령에 근거 없이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sup>44)</sup> 제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등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리운영 대행용역은 [표 9]와 같이 운영대행용역과 유지관리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르면 청소(건물청소서비스) 및 경비(시설물 경비서비스)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나 시설관리 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등에 따르면 공기업의 계약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표 9]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과업 현황

구분	운영대행	유지관리
과업	운영·안내, 행사기획, 홍보 등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추정가격	1,243,390,000원	5,820,730,000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없음	시설관리(X), 청소(O), 경비(O)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LH는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발주할 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품목까지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U는 2022. 8. 16. 시설관리 용역(유지관리 용역비용의 31% 차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는 [표 10]과 같이 ① 유사 용역수행 실적,<sup>45)</sup> ② ‘건물(시설)관리용역’ 및 ‘시설경비업’ 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시행(안)” 문건을 작성한 후 같은 해 8. 19. 관리 운영 대행용역 입찰공고<sup>46)</sup>를 하였다.

[표 10]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입찰참가자격 제한 명세

구분	제한내용
용역수행 실적	- 최근 5년 이내 2억 원 이상 유사용역 실적이 있는 자 (문화시설 운영, 문화행사 기획·개최, 공원·시설관리 운영 등)
중소기업자	- ‘건물(시설)관리용역’ 자격을 등록한 자 - ‘시설경비업’ 자격을 등록한 자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LH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건물(시설)관리용역을

4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제한은 법상 요건을 충족함

46) 법제처(안건번호: 15-0750)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비경쟁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 있음. LH는 조속한 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하면서 공동도급을 허용하였으나, 이 경우 일괄발주를 하더라도 유지 관리 용역은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등록한 중소기업자에 한해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자 2022. 9. 26. 단일 응찰자인 [가가] 공동수급체<sup>47)</sup>와 수의계약을 체결<sup>48)</sup>하였다.

## 2) 방안수립 용역 계약 준공금 과다 지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고, 용역계약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규정 시행규칙」(LH 내규) 제31조에 따르면 용역담당 부서장은 수급인이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검사자를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사업주관 및 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준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LH는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으면 준공검사자를 임명하여 과업의 준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47) [가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며, 2022. 8. 23. 건물(시설)관리용역 자격을 등록하였음.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나나]는 중소기업(중기업)에 해당하며, 각각 2011. 1. 1. 및 2015. 8. 3. 건물(시설)관리용역 및 시설경비업 자격을 등록하였음

4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그런데 LH는 2022. 11. 30. **[기]**로부터 방안수립 용역의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같은 해 12. 6.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방안수립 용역의 총 12개 과업 중 [표 11]과 같이 “방문객 출입관리 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과 “스포츠필드(야구장·축구장) 방문객 출입관리 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의 원가(설계가격)를 산정하는 과업이 누락되었는데도 해당 과업이 준공된 것으로 준공검사조서(준공금: 19,250,000원)를 작성하여 방안수립 용역의 과업 중 준공되지 않은 준공금(2,500,000원)을 **[기]**에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11] 방안수립 용역 과업 중 미준공된 과업**

(단위: 원)

연번	방안수립 용역 과업 내용	견적	준공(정산)
1	방문객 출입관리 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관련 예정원가 산정	1,000,000	1,000,000
2	스포츠필드(야구장·축구장) 방문객 출입관리 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예정원가 산정	1,500,000	1,500,000
	계	2,500,000	2,500,000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LH는 감사결과를 모두 수용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기]**와 방안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후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업무 절차 중 부적절한 요구가 있었고,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차질없이 정부정책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 4. 17. 과다하게 지급한

준공금(2,500,000원)을 해당업체의 타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준공금에서 상계하여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통보(시정완료)]

- ② 앞으로 수의계약절차를 진행하면서 2인 비교견적을 특정 업체에 모두 요구하거나 입찰공고 전 입찰정보가 사전 제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 ③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등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④ 관련자(U)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2-4. 관리운영 대행용역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 논란 관련

### 1. 국회감사요구 내용

① 국회는 **[가]**가 ‘행사대행’업체로 ‘관리운영 대행’을 하기에는 ‘시설관리’ 경험이 없는데도 2022. 8. 16. ‘사전 규격공고(자격)’가 나오자마자 이튿날인 8. 17. 법인 사업 목적에 “건물관리, 시설관리업”을 추가, 자격을 입증할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 감사요구하였다.

② 국회는 1인 수의계약 과정에서 입찰한 1개 업체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 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모르고 들어간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폭로한 것에 대해 감사요구하였다.

### 2. 감사결과

#### 가. 업무개요

LH는 앞서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의 관리 운영을 위해 반환부지의 공간 및 시설 운영, 건축물 및 시설 관리, 외부 공간 관리,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LH는 제한경쟁, 공동수급 및 분담이행<sup>49)</sup> 허용, 사후원가검토<sup>50)</sup> 조건으로 2022. 8. 19. 긴급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가]**와 **[나]** 공동수급체(대표사 **[가]**, 이하 “**[가]** 공동수급체”라 한다)<sup>51)</sup>만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9. 26. 재공고 없이 1인 입찰 수의계약(총계약금액: 6,632,502,268원)을 체결하였다.

4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유형으로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공동 수급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

5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입찰 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조건부 계약 방식

51) 계약 당시 **[가]**(분담비율: 87.07%)은 공원운영관리분야 및 국민소통프로그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나]**(분담 비율: 12.93%)는 시설관리분야, 환경미화분야, 보안관리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함

그리고 위 관리운영 대행용역에서 LH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 계속계약<sup>52)</sup>으로 1차연도(2022. 10. 11.~2022. 12. 31.)와 2차연도(2023. 1. 16.~2023. 12. 31.)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 변경을 거쳐 2024. 4. 30. 최종 준공(1차연도 준공금액: 860,087,486원, 2차연도 준공금액: 8,082,197,461원)하였다.

나. LH는 **▣**가 건물관리, 시설관리업 자격을 입증할 경력이 전무한 상태인 데도 관리운영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의혹 관련

**▣**는 이 건 입찰공고 2일 전인 2022. 8. 17. 법인 정관의 설립목적에 “건물관리업”, “시설관리업” 및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시설관리·청소 등의 유지관리 업무는 관련 경력이 있는 공동수급체 일원인 **▣**가 수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건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경위를 조사한 결과, LH는 2022. 8. 19.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자<sup>53)</sup>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단일 응찰자인 **▣** 공동수급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관리운영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한 1개 업체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모르고 들어간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폭로 관련

국회감사요구에서 언급된 업체는 주식회사 **▣**로, 동 업체는 2022년 8월

---

52) 관리운영 대행용역은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회계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원가검토를 통한 정산 결과에 따라 용역비용을 지급

53) **▣** 공동수급체 외 주식회사 **▣**가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음

관리운영 대행용역 입찰절차에서 입찰참가서를 제출했으나 입찰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감사기간 중 주식회사 [기밀]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당시 입찰공고에 따르면 참가업체는 조달청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또는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회사 [기밀]는 입찰참가서 제출 후 해당 업종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기밀]가 “우리가 모르고 들어간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 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폭로하였다는 언론 인터뷰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라. 그 밖에 LH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제한 및 용역계약 이행의 관리·감독 부실

### 1) 무자격 업체와 조경식재공사 계약 체결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및 제8조 등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여야 하며(공사예정금액 1천 5백만 원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는 제외), 조경수목·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하 “조경식재공사”라 한다)는 건설업의 업종 중 전문공사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LH가 2022. 8. 16. 수립한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시행(안)”에 따르면, 해당 과업에는 조경식재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첨부된 설계내역서(설계금액: 7,064,120,000원)에는 녹지조경관리 비용(식재 및 수목관리 등) 527,205,390원이 반영되어 있어 공사와 용역이 혼재된 계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H는 해당 용역을 발주할 때 조경식재공사 등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분리발주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득이하게 분리발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정하여 관리운영 용역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일괄발주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LH는 2022. 8. 16. 관리운영 대행용역 추정금액을 조경식재공사 (527,205,390원)가 포함된 7,064,12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 조경식재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하면서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입찰자격요건

으로 기재하지 않아, 2022. 9. 26. 건설업 미등록업체인 **[가]**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더구나 LH는 2023. 4. 12. 801,505,416원 상당의 조경식재공사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용역 제2회 설계변경 방침결정 검토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

이번 감사기간 중 **[가]** 공동수급체의 조경식재공사 이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12]와 같이 **[가]**가 총 1,101,957,395원<sup>54)</sup> 상당의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일부는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가]**(대표이사 V) 등 8개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조경식재공사 이행 내역**

(단위: 원)

구분	업체명	건설업 등록여부	금액
직접 수행	<b>[가]</b>	X	14,948,035
	<b>[가]</b>	X(불필요) <sup>2)</sup>	2,322,978
	<b>[가]</b>	X	18,728,987
	<b>[가]</b>	X(불필요) <sup>2)</sup>	800,000
	주식회사 <b>[가]</b>	X(추후 등록) <sup>1)</sup>	1,008,750,912
	주식회사 <b>[가]</b>	O	29,757,681
	<b>[가]</b> 주식회사	X	22,968,802
	주식회사 <b>[가]</b>	O	1,200,000
	주식회사 <b>[가]</b>	X(불필요) <sup>2)</sup>	2,480,000
	합계		1,101,957,395

주: 1. 주식회사 **[가]**는 과업기간 중인 2023. 7.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전문공사(1천 5백만 원 미만)는 건설업 등록 불필요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가]** 공동수급체로부터 조경식재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가]**<sup>55)</sup>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2023. 7. 5.에서야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하도급업체 8개 중 3개 업체<sup>56)</sup>는 건설업

54) 사후원가검토부 조건 계약으로 2차례 사후정산을 통해 최종 조경식재공사 금액은 1,101,957,395원으로 조정됨  
55) 주식회사 **[가]** 대표이사 V는 2023년 5월 “주식회사 **[가]**”(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가]**”(일반사업자) 상호를 사용하여 **[가]**로부터 하도급받은 조경식재공사를 이행

56) **[가]**, 주식회사 **[가]**, **[가]** 주식회사 등 3개 업체, 한편, **[가]**, **[가]**, 주식회사 **[가]** 등 3개 업체가 수행한 조경식재공사의 금액은 각각 1천 5백만 원 미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불필요

미등록 상태에서 조경식재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를 포함한 총 4개 업체<sup>57)</sup>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게 되었다.

## 2) 발주청의 승인 없는 무단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sup>58)</sup>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6개월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관리운영 대행용역 과업내용서<sup>59)</sup>,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용역계약특수조건」(LH 내규) 제3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LH의 서면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LH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LH는 ㈜가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이후에도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가 LH의 사전 승인 없이 안내센터 인력 운용 등 852,447,500원

57)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 4개 업체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59)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LH 내규) 제4조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됨

상당의 과업을 주식회사 [나다]에 하도급하는 등 [표 13]과 같이 총 2,036,246,297 원 상당의 과업을 임의로 하도급하였고, LH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13] 미승인 하도급 내역

(단위: 원)

과업명	업체명	하도급 내역	하도급 금액
대국민 소통 홍보활동 개방공간시설 운영관리	[나다]	홈페이지/예약시스템 개발, 관리·운영	261,000,000
	[나다]	안내센터 접수 등	35,000,000
	주식회사 [나라]	공원 안내 콘텐츠	27,935,804
	주식회사 [나마]	전시 기획, 작품 섭외 등	93,300,000
	주식회사 [나나]	안내센터 인력 운용 등	852,447,500
	[나바]	행사 기획 및 감리 등	110,000,000
행사 및 프로그램	주식회사 [나사]	공간 연출 및 디자인 등	90,462,993
	[나아]	경관조명 설치 작업 등	219,800,000
	[나자]	크리스마스 마켓 데코 작업 등	120,010,000
	[나치]	포토월 제작 등	30,000,000
	주식회사 [나카]	음악공연	96,290,000
	주식회사 [나타]	무대설치·디자인	100,000,000
합계			2,036,246,297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 3) 관리대행 용역 대금의 사후정산 부적정<sup>60)</sup>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조,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인력 10명 이상 등 원가계산용역 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

60) 국회감사요구사항 확인과정에서 LH가 [기기]에 2022~2024년 관리대행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5년 5월에 [기기]와 타 용역비 정산을 한다고 하여 이 부분 감사를 실시함

계산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행 후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입찰 전 공고한 사후원가검토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가를 검토·정산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 등에 따르면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노무비는 용역에 소요되는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8%)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10%)을 곱하여 산정하며, 재료비는 이윤산정 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계약에서 '외주성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이윤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고 해당 비용에 외주업체의 이윤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계약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제조 및 공사 원가 계산과 동일하게<sup>61)</sup> 계약상대자의 이윤을 계상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sup>62)</sup>

따라서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LH가 직접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행시켜서는 안 되며,

6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4조(제조원가계산 시 이윤) 및 제21조(공사원가계산시 이윤)와 동일하게 외주가공비는 타인 역무의 대가로서 기술료,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이윤 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이윤이 이중으로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윤 계상 시 제외함

62) 2025. 3. 18. 계약정책과-184, 2012. 12. 18. 계약제도과-1610

외주용역비를 포함하여 이윤을 계상하거나 부정확한 노무량 또는 노임단가 자료를 근거로 노무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된 최종원가 계산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원가 계산의 적정성을 기해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LH는 관리운영 대행용역 계약이행 완료 후에도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계약하지 않고, 사후원가계산용역 수수료를 관리운영 대행용역 원가에 포함시켜 해당 원가계산업무를 **[개인]**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가 [표 14]와 같이 재단법인 **[나라]**연구원(대표 W,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고 원가계산을 의뢰하였다.

**[표 14] **[개인]**와 연구원의 관리운영 대행용역 사후원가계산 용역 과정**

차수	일자	<b>[개인]-연구원</b> 업무 내용
1차연도	2022. 12. 8.	용역계약(계약금액: 8,800,000원) 체결
	2022. 12. 15.	증빙자료접수 <sup>63)</sup> 및 검토개시
	2022. 12. 21.	사후원가 보고서 작성완료 및 제출
2차연도	2024. 1. 18.	용역계약(계약금액: 30,000,000원) 체결
	2024. 1. 22.	증빙자료접수 및 검토개시
	2024. 4. 24.	사후원가 보고서 작성완료 및 제출

주: 관리운영 대행용역 각 과업의 세부 항목별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내역서 및 견적서, 입금증, 작업일보, 투입인원 및 인원별 업무내용 등의 자료접수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나아가 이번 감사기간 중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사후원가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LH **[해당부]** 차장 X<sup>63)</sup>는 **[개인]**가 2022. 12. 22. 제출한 1차연도 사후원가 보고서와 2024. 4. 25. 제출한 2차연도 사후원가 보고서상에 외주용역비를 포함하여

63) 형식적인 준공검사자는 1차연도의 경우 차장 Y, 2차연도의 경우 차장 Z(퇴직)로 임명하였으나, 실제 준공검사자는 1차연도의 경우 차장 X 및 부장 A가 수행하였고, 2차연도의 경우 차장 X 및 부장 AA가 수행

이윤을 계상하거나 부정확한 노무량과 노임단가 자료로 노무비를 계상하는 등 기준을 위반하여 산정하였음에도 이를 부실하게 검사<sup>64)</sup>한 후 상급자의 결재<sup>65)</sup>를 받아 준공처리하였다.

그 결과 [별표 8] “1·2차연도 당초원가계산서 및 수정원가계산서 비교”와 같이 사후원가가 부적정하게 산정되어 관리운영 대행용역 대가가 1·2차연도 총 515,394,278원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외주용역비를 포함하여 이윤 과다 계상

연구원은 당초 외주용역비를 노무비·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이윤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료비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기기]** 대표 AB는 LH에 이윤 등 산정 관련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받지 않았는데도 연구원에 “LH와 재료비(외주용역비)를 포함하여 이윤 등을 산정해도 된다고 협의하였다”고 허위로 유선 통보하였고, 연구원은 LH에 별도 확인 없이 이윤 산정 시 재료비(하도급 외주용역비 및 물품구매 대행용역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1·2차연도 이윤이 총 335,961,865원(1차연도: 48,505,259원, 2차연도: 287,456,606원) 과다 지급되었다.

### (2) 부적정하게 산정된 노무량과 노임단가로 노무비 과다 계상

연구원은 **[기기]**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인력 투입 현황 등 증빙자료를 통해 1차연도(2022년)와 2차연도(2023년) 시설관리·미화·보안 업무의 노무량 및 노임단가를 산정하면서, 1차연도의 경우 [표 15]와 같이 ‘노무량’은 실투입일수를 적용하고, ‘노임단가’는 투입 직종별로 실적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 중

64) 이에 대하여 X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기획재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원가와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

65) LH **[기기]**본부 부장 A와 AA가 이를 결재

낮은 금액<sup>66)</sup>을 적용하는 등 적정하게 산정하였다.

그런데 2차연도 산정 과정에서, 연구원은 [표 15]와 같이 ‘노무량’ 산정 시 **▣**가 제출한 **▣**의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인력 투입현황’ 자료상 투입 일수가 연 366일로 되어 있어, 해당 수치가 실투입일수가 아닌 해당 직원의 **▣** 재직기간 의미로 과다 작성된 것임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별다른 수정·보완요 청 없이 실투입일수로 간주하여 노무량을 산정하였다.

한편, 연구원은 2차연도 ‘노임단가’ 산정 시, 실적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 비교를 위해 **▣**에 수차례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단순노무’ 기준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표 15] 연구원이 노무비 산출을 위해 활용한 증빙자료 및 구성 항목의 적용여부

차수	노무비 구성 항목		증빙자료	적용여부	비고
1차년도 (2022년)	노무량		임시개방부지 근무인력 투입현황	적용	실투입일수
	노임단가	직종분류	임시개방부지 근무인력 담당업무	적용	
		실적노임단가	급여명세서, 계약서, 인건비 현황 집계표	적용	
		시중노임단가	투입인원의 담당업무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적용 (작업반장, 안전관리사, 단순노무)	적용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2차년도 (2023년)	노무량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인력 투입현황	적용	재직기간
	노임단가	직종분류	미제출	미적용	
		실적노임단가	급여명세서, 입금증, 인건비 현황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자료가 누락되어 미적용	미적용	
		시중노임단가	단순노무 기준 적용	적용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별표 9] “2차연도 시설관리과업의 노무량 및 노임단가 산정 당초 자료 및 수정자료 비교”와 같이 **▣** 근로자 총 106명의 노무량과 노임단가가 부적정하게 산정되어 [표 16]과 같이 2차연도 노무비가 총 122,757,767원만큼 과다 지급되었다.

66) 실적노임단가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한 금액이고,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국가 계약 시 기준이 되는 직종별 표준 임금이며, 이 둘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임금단가로 적용

[표 16] 기내의 2차연도 당초 노무비와 정당 노무비 비교 명세

(단위: 원)

구분 <sup>주)</sup>	세부 내용	당초 노무비	정당 노무비	과다 지급 금액
시설관리미화	기계, 전기, 건축 시설, 소방 상시 관리 인력	300,316,030	279,545,133	20,770,897
	임시개방부지 개방공간 및 건물 주변부, 시설 등 미화 인력	390,472,440	362,447,276	28,025,164
보안 관리 운영	출입구 경비, 검문검색, 상황실 운영 등 보안 관리 전반 인력	568,607,610	516,372,762	52,234,848
5단지 임시관리	근무인원 인건비	13,365,780	12,800,550	565,230
	근무인원 인건비(2)	47,446,040	38,288,420	9,157,620
분수정원	기계, 전기, 건축 시설, 소방 상시 관리인력	33,992,960	33,992,883	77
	시설, 미화 관리 전반 인력	61,990,350	49,986,419	12,003,931
계		1,416,191,210	1,293,433,443	122,757,767

주: 내역서를 기준으로 기내가 수행한 과업 분류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이윤과 노무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LH는 [표 17]과 같이 적정

원가인 8,426,890,669원보다 515,394,278원 많은 8,942,284,947원을 최종 지급하였다.

[표 17] 관리운영 대행용역 수정원가계산 결과 및 과다 지급 금액 현황

(단위: 원)

구분	지급 총원가	수정 총원가	과다 지급 금액			
			총계	비록	세부 금액	정당금액 계산방식
1차연도	860,087,486	806,731,701	53,355,785	이윤	48,505,260	이윤산정 대상항목에서 외주용역비 제외 등 <sup>주)</sup>
				부가가치세	4,850,525	과다 산정된 이윤의 10%
2차연도	8,082,197,461	7,620,158,968	462,038,493	노무비	122,757,767	과다 산정된 노무비 제외
				일반관리비	9,820,621	과다 산정된 노무비의 8%
				이윤	287,456,606	이윤산정 대상항목에서 과다 산정된 노무비와 외주용역비 제외 등 <sup>주)</sup>
				부가가치세	42,003,499	과다 산정된 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의 10%
계	8,942,284,947	8,426,890,669			515,394,278	

주: 이윤산정 대상항목에서 과다 산정된 노무비와 외주용역비를 제외하고, 이윤산정 대상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나

기준에 빠져있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재산정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및 관련자 의견

LH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유관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검토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3)항” 관련하여, [기호]에 과다 지급된 이윤과 노무비는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업체와의 타 용역 준공금 지급시 상계처리로 회수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문시행 완료).

X는 당시 복직 이후 업무과다로 인해 원가계산업무는 하도급이 안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원가계산에 관한 부분은 본인이 잘 몰라서 놓친 부분이 있었고, 원가계산업체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믿었으며 과다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도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1)항” 관련하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조경식재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기호](구 주식회사 [기호]), [기호], 주식회사 [기호], [기호] 주식회사를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조치하고(통보)

② 앞으로 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2)항” 관련하여)

①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 없이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 용역을 하도급한 주식회사 [기호](구 주식회사 [기호])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 없이 발주받은 용역을 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 (“3) 항” 관련하여)

① 원가계산용역기관인 재단법인 ~~나~~파연구원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주식회사 ~~나~~하(구 주식회사 ~~카~~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이윤 및 노무비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재단법인 ~~나~~파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의2 등에 따라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각각 마련하고(통보)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 4. 17.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대금(515,394,278원)을 해당 업체의 타 용역 준공금 지급시 상계처리<sup>67)</sup>하는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며[통보(시정완료)]

③ 앞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과 원가계산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거나, 원가계산용역 준공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윤 및 노무비 등이 과다 산정·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원가계산용역에 대한 준공업무를 소홀히 한 X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7) 사후원가검토 정산 시 대행용역(운영)에서 372,723,038원, 대행용역(유지관리)에서 145,421,240원, 총 518,144,278원 [이 건 515,394,278원에 “2-가항”에서 지적한 원가(설계가격)산정 일부 과업 누락에 대한 환수액 2,750,000원 (부가세 포함)을 합한 금액]을 감액하였음

[별표 1]

### 대통령실 집들이행사 결과보고서 수정 전과 후 비교

수정 전	수정 후																		
<b>I 개요</b>																			
<p><b>1. 주진 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생활에 변화를 겪는 지역주민을 초청,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 이미지 및 메시지 전달</li> <li>○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 제공</li> </ul> <p><b>2. 행사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명)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li> <li>○ (일 시) 2022. 6. 19.(일) / 오후 4시~오후 6시</li> <li>○ (장 소)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li> </ul>	<p><b>1. 주진 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산공원 시범개방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및 어린이를 초청,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li> </ul> <p><b>2. 행사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명) 「지역주민 어울림행사」</li> <li>○ (일 시) 2022. 6. 19.(일) / 오후 4시~오후 6시</li> <li>○ (장 소) 용산공원 시범개방부지 일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시간 (소요시간)</th><th style="width: 40%;">내용</th><th style="width: 45%;">비고</th></tr> </thead> <tbody> <tr> <td>16:00-16:25 (25')</td><td>○ 축하 공연 1회차: 3군 및 전통 의상대 2회차: 동작연희단 사용놀이</td><td></td></tr> <tr> <td>16:25-17:40 (75')</td><td>○ 집들이 행사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활동)</td><td>16:50-17:50 <b>집들이 행사 종료</b> * 그동안의 관람, 즐려 아끼 영문, 군관 관람, 푸른 인식, 어린이와 함께한 활동</td></tr> </tbody> </table>	시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6:00-16:25 (25')	○ 축하 공연 1회차: 3군 및 전통 의상대 2회차: 동작연희단 사용놀이		16:25-17:40 (75')	○ 집들이 행사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활동)	16:50-17:50 <b>집들이 행사 종료</b> * 그동안의 관람, 즐려 아끼 영문, 군관 관람, 푸른 인식, 어린이와 함께한 활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시간 (소요시간)</th><th style="width: 40%;">내용</th><th style="width: 45%;">비고</th></tr> </thead> <tbody> <tr> <td>16:00-16:25 (25')</td><td>○ 축하 공연</td><td>1회차: 3군 및 전통 의상대 2회차: 동작연희단 사용놀이</td></tr> <tr> <td>16:25-17:40 (75')</td><td>○ 어울림 행사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활동)</td><td>16:50-17:50 <b>주요내면 행사 종료</b> * 그동안의 관람, 즐려 아끼 영문, 군관 관람, 푸른 인식, 어린이와 함께한 활동</td></tr> </tbody> </table>	시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6:00-16:25 (25')	○ 축하 공연	1회차: 3군 및 전통 의상대 2회차: 동작연희단 사용놀이	16:25-17:40 (75')	○ 어울림 행사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활동)	16:50-17:50 <b>주요내면 행사 종료</b> * 그동안의 관람, 즐려 아끼 영문, 군관 관람, 푸른 인식, 어린이와 함께한 활동
시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6:00-16:25 (25')	○ 축하 공연 1회차: 3군 및 전통 의상대 2회차: 동작연희단 사용놀이																		
16:25-17:40 (75')	○ 집들이 행사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활동)	16:50-17:50 <b>집들이 행사 종료</b> * 그동안의 관람, 즐려 아끼 영문, 군관 관람, 푸른 인식, 어린이와 함께한 활동																	
시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6:00-16:25 (25')	○ 축하 공연	1회차: 3군 및 전통 의상대 2회차: 동작연희단 사용놀이																	
16:25-17:40 (75')	○ 어울림 행사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활동)	16:50-17:50 <b>주요내면 행사 종료</b> * 그동안의 관람, 즐려 아끼 영문, 군관 관람, 푸른 인식, 어린이와 함께한 활동																	
<p><b>1-2.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 행사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진행</li> <li>- 구성 : 메인무대, 체험 부스, 포토존, 먹거리마당, 일일장터</li> <li>- 내용 : 잔디마당에 설치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체험</li> </ul>	<p><b>1-2. 용산공원 잔디마당 행사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지역주민 어울림행사」 행사 프로그램 진행</li> <li>- 구성 : 메인무대, 체험 부스, 포토존, 먹거리마당, 일일장터</li> <li>- 내용 : 잔디마당에 설치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체험</li> </ul>																		

수정 전				수정 후			
그림 2-2.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 행사장 구성				그림 2-2. 잔디마당 행사장 구성			
시간	소요(분)	행사내용	비고	시간	소요(분)	행사내용	비고
15:00~16:00	60	초대주민 입장	부문개방부지 입장 후 이동	15:00~16:00	60	초대주민 입장	부문개방부지 입장 후 이동
16:00~16:20	20	축하 공연 1	3군 및 전통 의상대	16:00~16:20	20	축하 공연 1	3군 및 전통 의상대
16:20~16:23	3	개회 및 행사안내	(메인무대) AI 아나운서 진행	16:20~16:23	3	개회 및 행사안내	(메인무대) AI 아나운서 진행
16:23~16:40	17	축하 공연 2	동학연회 사물놀이	16:23~16:40	17	축하 공연 2	동학연회 사물놀이
16:50~16:55	5	(VIP) 어린이 그림전시 관람		16:50~16:55	5	(주요내면) 어린이 그림전시 관람	
16:55~17:05	10	(VIP) 출사람, 아이스크림 간식 나눔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	16:55~17:05	10	(주요내면) 출사람, 아이스크림 간식 나눔	우산공원 잔디마당
17:05~17:20	15	(VIP) 일일장터 방문	일일장터 및 체험부스 운영	17:05~17:20	15	(주요내면) 일일장터 방문	일일장터 및 체험부스 운영
17:20~17:40	20	(메인무대) 지역주민 공연 관람	아모리스 혼악 4중주, AJ	17:20~17:40	20	(메인무대) 지역주민 공연 관람	아모리스 혼악 4중주 AJ
17:40~17:45	5	(VIP) 환영 인사	(메인무대) AI 아나운서 진행	17:40~17:45	5	(주요내면) 환영 인사	(메인무대) AI 아나운서 진행
17:45~17:48	3	(VIP) 어린이와 기념촬영		17:45~17:48	3	(주요내면) 어린이와 기념촬영	
17:48~17:50	2	(VIP) 회장		17:48~17:50	2	(주요내면) 회장	
17:50~19:00	75	(용산공원) 전체 및 피장	기념품 증정	17:50~19:00	75	(용산공원) 산책 및 피장	기념품 증정

## 2-1. 축하 공연

- 장소 :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 메인무대 앞

### 2-2. 체험 부스

- 장소 :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 체험 부스 존

### 2-3. 용산 기반 기업 체험

- 장소 :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 기업 체험 부스 존

### 2-4. 어린이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

- 장소 :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 그림 전시 존
- 배경 :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어린이 그림을 전시하여



## 2-1. 축하 공연

- 장소 : 잔디마당, 메인무대 앞

### 2-2. 체험 부스

- 장소 : 잔디마당, 체험 부스 존

### 2-3. 용산 기반 기업 체험

- 장소 : 잔디마당, 기업 체험 부스 존

### 2-4. 어린이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

- 장소 : 잔디마당, 그림 전시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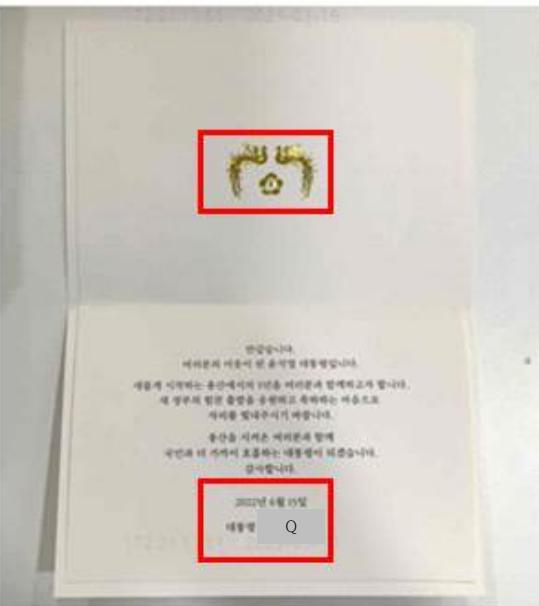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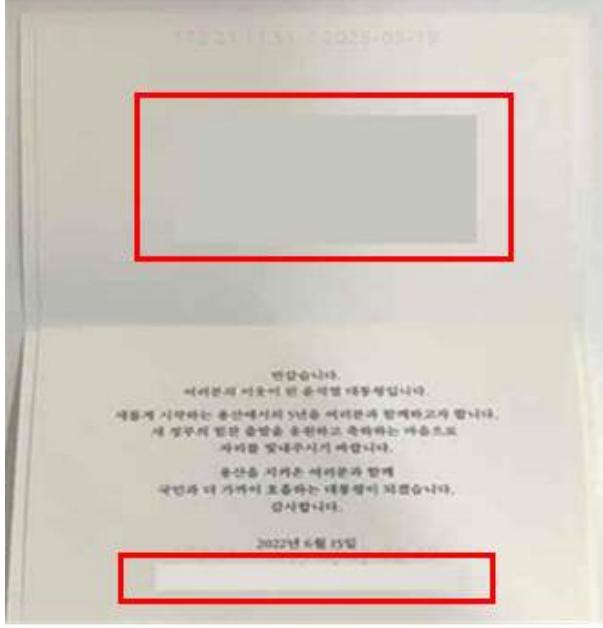




그림 347. 기념품 구성(별 전병, 기념품 액자, 종이 가방)



그림 347. 기념품 구성(별 전병, 기념품 액자, 종이 가방)

수정 전	수정 후
<b>초대장</b> 	<b>초대장</b> 
<p><b>IV 언론 보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언론사에 행사 관련한 기사 <u>약 163건</u> 노출</li> </ul> 	<p>(언론보도 내용 없음)</p>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A-B 통화 녹취록(2022. 5. 27.)

B : 할 건데.  
A : 네.  
B : 어, 이제 저는 오라 그리고 LH는 판단해서 오라고 하는데 뭐,  
A : 네.  
B : 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A : 저희는 부담스러워요. 돈만 내고  
B : (웃음)  
A : 계산만 할게요. (웃음)  
B : 계산만 하실래요?  
A : 괜히, 예.  
B : 예.  
A : 그 뭐, VIP 행사에 저희가 뭐, 의견을 내기도 그렇고.  
B : 저도 사실 그래요,  
A : 네.  
B : 거기서 줘고 하던데.  
A : 네.  
B : 그러면 그러시죠 뭐 필요 없으려나 LH?  
A : 네.  
B : 그래도, 그래도 돈 대시는데 돌아가는 상황 아셔야 되지 않나,  
A : 음.  
B : 싶어가지고.  
A : 네.  
B : 노 땡큐인가요? (웃음)  
A : 네. (웃음)  
B : 제, 제가 참석하고.  
A : 저희 괜히 막 이게  
B : 네.  
A : 밖으로 또 나가면  
B : 네.  
A : 안 되니까 그,  
B : 예, 예.  
A : 예, 예.  
B : 알겠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혹시 뭐,  
A : 네.  
B : 조치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A : 네, 네, 과장님. 그리고 그,  
B : 네.  
A : 아까 제가 말씀, 부탁드린 거, 저희 사장님 좀,  
B : 국장님까지는 오케이 했고요.  
A : 네.

B : 이제 국장님의 장관님 보고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A : 아~

B : 예, 예.

A : 예. 알겠습니다. 아휴.

B : 월요일 정도에 결과 나올 것 같아요.

A : 아휴, 고맙습니다.

B : 예.

A :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자료: A 임의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3]

C-B 통화 녹취록(2022. 5. 20.)

C : 네, 과장님.  
B : 네.  
C : 저희가 챙기는 거 맞고요.  
B : 네, 네, 네.  
C :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 불을 거여서  
B : 네, 네, 네.  
C : 특별히 ~~까~~단에서  
B : 네.  
C : 해줄 건 없을 것 같은데.  
B : 예, 예.  
C :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벤트 자체가  
B : 네.  
C : 용산공원 임시 개방의 사이드 이벤트거든요.  
B : 예, 예, 예.  
C : 임시 개방을 하면서 치러지는 두 개의 이벤트여서  
B : 네.  
C : 네. 그렇게  
B : 어, 그러니까 무슨  
C : 성, 성격을  
B : 나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C : 네, 네, 네.  
B : 이게 또 실질적인 내용을  
C : 네, 네.  
B :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실질적인 내용을 컨트롤, 뭐 컨트롤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그렇죠.  
C : 아, 저희가 근데 지금 왜냐하면 지금  
B : 어.  
C : 열, 열흘도 아니고 13일 동안 계속  
B : 그러니까  
C : 하셔야 되고. 그날 쉬는 게 아니라 잠깐만 쉬고 하는 거여서 저희가 이 내용을 챙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B : 그러니까 뭐 챙기고 싶다고 전화드린 건 아니고,  
C : 예, 예.  
B : 국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C : 아~ 예.  
B :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뭐냐  
C : 아~  
B : 그래서 일단 예산은 있고  
C : 네.  
B : 내용도 거기서 직접 챙겨서 우리는 참고, 일단은 우리는 용산공원 주력으로 챙긴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C :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임시 개방의 서브, 서브, 아니 사이드 이벤트의 형태고.

B : 그렇죠.

C : 네.

B :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게 궁금한 거지, 나는 실무자로서 거기서 뭔가 행사가

C : 네.

B : 마음에 안 들었어, 빵구가 났어,

C : 네.

B : 그러면 그거를 내부적…

C : 저희가 책임져야죠.

B :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는 우리가 먹겠지. 육은.

C : 아, 그렇죠. 네.

B : 내가 깨졌잖아. 뭐 이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나는.

C : 네, 네, 네, 네.

B : 아~ 알았어요.

C : 제가 그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B : 아~아~예.

C : 보내드릴게요.

자료: B 임의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4]

A-D 통화 녹취록(2022. 5. 18.)

D : 계획 제출하시는데 그, 행사 비용은 어디 들어 있어요?

A : 행사 비용이 계획에는 없죠.

D :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A : 네.

D : 넣는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A : (한숨)

D : 그 항목 중에?

A : 애매하죠. 관리 운영비에 넣어야 되는데.

D : 예, 거기다 넣어서 해야죠, 뭐 그러면.

A : 근데 관리 운영비는 벌써 오버가 돼도 한참 오버되고 있는 중입니다.

D : 아, 그건 이제 조정해야죠.

A : 네, 네.

D : 네.

A : 그러면 뭐 B 과장님의 요청하시는 거에서

D : 네.

A : 어, 이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발주는 LH가 하고. 용역사 업무는 저기 ④ 과에서 하는 걸로.

D : 예, 예.

A : 예, 예, 예. 그리고 뭐, 금액은 B 과장님 한 1억 5,000 생각하고 계시는데 뭐, 구체적인

D : 1억 5,000이나 되나요? 근데 그게?

A :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뭐 돈이 나오는 건데, ④ 과장님은 뭐, 한 1억, 1억 5,000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D : 예.

A : 예. 근데 사실

D : 저한테는 1억 정도 얘기하던데.

A : 예, 뭐, 뭐, 사실 뭐, 무슨 무대를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D : 네.

A : 예. 그리고 문서가 저희한테 아직도 안 왔는데.

D : 아, 지금 제가 오늘

A : 예, 예, 예.

D : 아침에 총리실 회의 갔다가

A : 네.

D : 방금 또 장관님 보고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사무실에.

A : (한숨) 그래서 그, 문서, 문서

D : 좀, 오후, 오후에 해서 보내드릴게요.

A : 문서 주실 때

D : 예.

A : 뭐, 현장 격리 및 행사 뭐, 뭐, 행사 용역,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 등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조속히 뭐, 행사 용역도 한 줄 넣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더 편하거든요. 어차피 행사 용역 밸주,

D : 아이, 뭘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해요 저희가. 아휴 저 (웃음)

A : (한숨)

D : 그거 넣어드릴게요. 뭐, 현장 정리, 화장실 뭐 이런

A : 예, 예, 예. 행사 용역은

D : 행사 지원.

A : 행사 용역도 넣어주세요.

D : 행사 지원. 행사 지원하면 되죠. 그렇죠?

A : 알겠습니다. 하여간 문서 빨리 주세요.

D : 예, 예.

A : 네, 네, 네. 수고하세요.

D : 네.

자료: A 임의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5]

A-B 통화 녹취록(2022. 5. 23.)

B : 알 수 있잖아요.

A : 음.

B : 근데

A : 네, 네.

B :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A : 네.

B : 얼마 정도 하시려고 하셨었어요?

A : 저는 사실

B : 네.

A : 행사 내용 봐서는

B : 네.

A : 행사 내용을 봤거든요. 한 1억

B : 네, 제가 본…

A : 1억 이내면

B : 그렇죠?

A : 만들 게,

B : 충분하겠던데. 예.

A : 만들 게 없는데요. 무슨 무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B : 그렇죠. 그렇죠.

A : 뭐, 아이들 좀 나눠줄 만한 그런,

B : 맞아요. 네.

A : 뭐, 저거기 때문에.

B : 네.

A : 어, 이렇게 1억 원 이내면 충분히 할 수, 우리가 뭐 텐트 치고 무대 만들고 동영상 틀고 무슨 뺑빠레 올리는 대통령

B : 그러니까. 예, 예, 예.

A : 행사도 한, 3억이면 하거든요.

B : 그러니까요.

A : 예.

B : 아무튼 뭐 그거는 좀 LH에서 해 주시고요.

A : 네, 네.

B : 네,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생겨서,

A : 네.

B : 더, 더 닦달을 할 것 같다. 질적으로.

A : (한숨)

B : 그렇고. 뭐, 뭐 LH는

A : 벌써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B : 그러니까요. 근데 LH는 그때 뭐, 자료 챙겨가실 게 결국은

A : 네.

B : 우리가 무슨 일 이만큼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A : 네, 뭐  
B : 네.  
A : 저희는 계속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 일을  
B : 예, 예.  
A : 하고 있거든요.  
B : 네, 네.  
A : 그냥 어차피 저희 뭐, 잔디 심고,  
B : 네.  
A : 그런 것들이 9월 행사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B : 네, 네, 네.  
A :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 : 아무튼 그때 뵙고 또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하고.  
A : 네, 네.  
B : 깨지면 또 깨지고 뭐, 그래야죠. (웃음)  
A : (웃음)  
B : 그때 봐요, 그러면은.  
A : 예, 혹시 장소 같은 거 연락 오면  
B : 똑같죠, 뭐 10시니까 아마 9시 40분까지 국방부 서문 앞에 가면  
A : 음.  
B : C 사무관이 또 인계해 주는, 통솔해서 따라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A : 음.  
B : 출입 조치는 어쨌든 저희가 보낼게요. 원래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A : 네, 네, 네.  
B : 그 멤버 그대로.  
A :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B : 네.  
A :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B : 예.

자료: A 임의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6]

A-B 통화 녹취록(2022. 6. 3.)

B : 예, 여보세요?

A : 아, 예, 과장님.

B : 네, 네.

A : 그, 기기에서

B : 네, 네.

A : 이제 견적서를, 내역서를 가져왔어요.

B : 예.

A : 보내왔는데,

B : 예, 예, 예.

A : 생각보다 돈이 많습니다. (웃음)

B : 얼마예요?

A : 한 2억 6~7,000, 2억 6,000.

B : 예? 뭐, 아니 하루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A : 그러니깐요.

B : 어…

A : 그래서 저는 사실 아마 과장님이 그, 맥스를 준 건 한 1억 5,000 정도

B : 예, 저

A : 이내로

B :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는데.

A : 네.

B : LH에도 많지 않은 걸로 안다.

A : 네, 네.

B :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1억이나,

A : 네.

B : 정말 많아야 1억 5,000일 것 같다.

A : 네.

B : 근데 한번 의논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A : 음.

B : 예, 예.

A : 네.

B : 근데 모르겠어요. 그, V(IP)실에서

A : 네.

B : 돈 생각하지 말고 자꾸 하라고 푸쉬하는 부분도 있고 아래가지고.

A : 네.

B :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은 또, 그쪽이 좀 부풀린 건지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A : 음,

B : 좀 과하긴 하네요.

A : 하,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B : (웃음)

A : 또 괜히 업체가

B : 예.

A : 아, 또, 아, LH에서 이거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B : 아~

A : 줄여서 또 이제 뭐,

B : 예.

A : 그, 경호실하고,

B : 예.

A : 경호실하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치,

B : 네, 네, 네, 네.

A : LH가 과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B : 아~

A : 잘랐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B :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A : 예.

B : 이제 뭐, 좀 보고선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 못 하는 건가?

A : 저희는

B : 예, 예.

A : 사실 이제 행사 내용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B : 네, 네.

A : 그냥 업체 쪽에다가 뭐라고 할 만한, 코멘트 할 만한 그게 없어서.

B : 네.

A : 혹시,

B : 들어,

A : AD 사무…

B :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사무관님. AD 사무관님도 그거 관여 안 하고 저도 사실은,

A : 네, 네.

B : 오라고는 하는데.

A : 네.

B : 관여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A : 그러면

B : 네, 네, 네.

A :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업체가 그냥 달라는 거를 그냥 다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까요?

B : 근데 그게 내역을 봐야지 된다는 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내역을 보고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정말,

A : 네.

B : 저는 근데 그렇게 왜 많이 드는지, 뭐가 많이 드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많이 드는지  
는.

A : 뭐, 제일 많이 드는 게

B : 예, 예, 예.

A : 선물? 무슨 어떤 선물.

B : 한과? 한과.

A : 예, 예, 뭐,

B : 한과랑 캐리커처.

A : 뭐, 그런, 그런 선물하는 게 한 2,000만 원 뭐,  
B : 예, 예.  
A : 한 몇천만 원 되고요.  
B : 네, 네.  
A : 나머지는 이제 뭐, 이게 행사가 되게 많다 보니깐.  
B : 네, 네.  
A : 어린이 행사 하나에서도 거기서 안에 쪼개지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B : 네, 네.  
A : 그러니까 이게 다 흘뿌려져 있어가지고, 사실 뭐 조금씩 너무 여유분을 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가, 하나가 이렇게 푹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자르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B : 자르면은 안 되고.  
A : 네, 네.  
B : 아이템을 저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redacted] 같은 경우도  
A : 네, 네.  
B : 아무리 저기랑 해도 우리도 예산을 해야 되니까,  
A : 네.  
B : 그거 같은 거 자재를 너무 좋은 거를 하지 말고 이걸 조금 급을 맞춰라라든지  
A : 네, 네, 네.  
B : 그 정도 주문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보내주는 용역사이기 때문에  
A : 네.  
B :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 : 네.  
B :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제가 그 용역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A : 그렇죠. 예.  
B : 예, 그러니까 제가  
A : 그러면  
B : 항상 말씀드리는 게, [redacted] 과장님한테 보고드리고  
A : 네, 네, 네.  
B : 하시라고. 그러니까  
A : 저도 이제 뭐, [redacted] 과장님한테는  
B : 네, 네.  
A : 이제 똑같이 말씀드렸죠.  
B : 네, 네.  
A : 맥스 한 1억 5,000  
B : 예.  
A : 아마 1억 원 이내로,  
B : 아~  
A : 뭐, 큰 뭐, 이상한 거 없으니까.  
B : 아~  
A : 근데 이제 뭐, 막 2억 6,000 정도 나왔으니까. 한번 과장님도 다시,  
B : 예.  
A : [redacted] 과장님 아, 바꿔셨잖아요?  
B : 아직 안 바꿔었어요. 저희가,

A : 아직 안, 네.

B : 예, 지난번에도 **가가** 예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가**가 하려고도 했었잖아요.

A : 네, 네, 네.

B :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서,

A : 네, 네.

B :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라고 약간 언질을 췄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A : 네.

B : V(IP)실, 용역서가 용역사가 그걸 V(IP)실에다가 직접 얘기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LH 입장에서 부담스러우시면은

A : 네.

B : **회**과에서 나오는 돈이었으니까,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것도 이게, 이게 제가 관리하는 돈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A : 예, 알겠습니다.

B : 예산 부분 제가 또 보고받은 것도 아니고.

A : 알겠습니다.

B : 근데 저희도 근데 6억,

A : 예.

B : 지금 나온대요.

A : 6억이 나온다고요?

B : 예, 근데 저희는

A : 아, **가가** 거요?

B : 열흘 행사잖아요.

A : **가가** 거?

B : 예, 아, **가가** 말고, **가다**. **가다**.

A : 아, **가다** 거?

B : 예.

A : 응~

B :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A : 아, **가다**도 6억이요? 음~

B : 얘기할 텐데 좀,

A : 네, 네.

B : 돈 모자라는 부분은

A : 네, 네.

B : 저, LH 그, (웃음) 돈에서 좀 어떻게 저기 해봐라, 어제 그런,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2억 6,000은.

A : 네.

B :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제가 하는 거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협의해 보자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A : 네.

B : 좀 방안을 찾아보자는

A : 알겠습니다. 그러면,

B : 응~

A : 일단 저희가 업체 측하고 한번 조심스럽게 당초 얘기한 금액보다 좀 너무 많이 오버가 됐는데

B : 예, 좀 한번 얘기는 드려볼 수 있잖아요. 예.

A :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B : 예, 예.  
A : 근데 아휴, 사실  
B : 응.  
A : 부담스러워요.  
B : 행사에  
A : 또 LH가 돈 깎으라고 그래서 이거 못 합니다. 가서 일러버리면  
B :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웃음) 근데 그리고부장님, 그러니까 저는  
A : 네.  
B : 내용을 보라고 가는 건지, 돈이랑 이런 걸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 : 네, 네, 네.  
B : 회의를 한 번 오시고,  
A : 네.  
B : 이제 뭐,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좀 관여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면은 저도 사실,  
A : 아니요. \*\*\* (웃음)  
B : 저도 사실은 거기서 뭐,  
A : 예, 예, 예.  
B : 거기 C 사무관이 거의 다 잡고 하는 거라 대통령실에서.  
A : 아,  
B : 예.  
A : 그냥, 그냥 아휴, 이번에는 달라는 대로다가 그냥 다 주는 걸로  
B : 2억 6,000을?  
A :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B : 어~  
A : 괜히 그거 뭐 잘라가지고 또 나중에 말 나올까 봐. 아유, 너무 조심스러워요. VIP 행사인데.  
B : 어~ (웃음)  
A : 그리고  
B : 네.  
A : 과장님 그,  
B : 네.  
A : 사실 **기기** 용역을 우리가 또 수의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B : 네, 네, 네.  
A : 뭐, 그, VIP 행사라고 안 하고 뭐, 어떤, 임시 개방, 행…  
B : 그거는 그러니까  
A : 네, 네.  
B : **바**과에서 저기 하시는 거라가지고.  
A : 네.  
B :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A : 네.  
B : **바** 과장님이랑 그러니까, 의논을 해보시는 게.  
A : 아니 이제 저희가  
B : 네, 네, 네.  
A :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B : 네, 네, 네.

A : 그러니까 임시, 그, 임시 개방에, 임시 개방을 할 거다.

B : 네, 네.

A : 그걸로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벤치 넣고 화장실 넣고 하는 거는

B : 네, 네.

A : **[b]**과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B : 네, 네, 네.

A : 근데 이제 이 V(IP)행사는 사실 임시 개방하고는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오픈시키면 안 되고, 하여간 또 별건으로다가 진행이 되잖아요.

B : 근데 거기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A : 그러니까 이거

B : 네, 네.

A : 이거를 개방 행사랑 같이 묶어서요?

B :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과장님의 어쨌든

A : 네.

B : 이거에 대한 거는 과장, **[b]** 과장님이 저기 쥐고 있으니까,

A : 네.

B :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b]** 과장님 말씀드리고 이거는 결정권은 국장님이 계신거죠, 최종은. 그러니까,

A : 저는

B : 네, 네.

A : 제 생각에는 사실 임시 개방에 대한 거는 **[b]**과에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 그, 개방 행사하고 맞물려서 이제 VIP 행사가 같이 열리고 있는 건데.

B :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A : 네, 네.

B : 그거를 거기에 같이 한배에 태워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 : 음.

B :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 만다라는 얘기도 없었고.

A : 네.

B : 그리고 그걸 제가 가이드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 : (한숨)

B : 예. 그러니까 **[b]** 과장님이랑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A : 네.

B : 그걸로 하나에 태워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A : (한숨) 사실

B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명백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A : 네.

B : 예. 그러니까 그, 부지정리 쪽에 이제 **[b]**과에서 거기랑 해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아휴, 저도 애매하네요.

A : 과장님 지금

B : 예.

A : 제가 입장이 되게 난처한 게

B : 예, 예, 예.

A : 지금 과장님의 돈이 없어가지고 좀 도와달라,

B : 예, 예.

A : 그래서 아이, 뭐, 그러면 □과 쪽에서 받은 돈이 있으니까,  
B : 네, 네, 네.  
A : 그걸로다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과장님 지금 이제 그거는 □과랑 얘기를 하라 그러시면 사실 제가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B : 아니  
A : 예.  
B : 난처한 게 아니라,  
A : 네.  
B : 그거를 저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A : 네.  
B : 예, 그,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A : 네.  
B : 쓰겠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A : 아니 그러니까 돈,  
B : 예, 예, 예.  
A : 돈, 돈은, 돈은 이제  
B : 예, 예, 예.  
A : 제가 D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B 과장님 얘기 들었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B : 네.  
A : 우리가 장군 숙소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를 주기로다가는 했죠?  
B : 네, 네.  
A : 비용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고 우리가 계약을 또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B : 그러니까요. 예.  
A : 근데  
B : 그러니까 그거를  
A : 네.  
B : 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A : 네.  
B : 그, LH에 민간 위탁 나가는 돈을 쓰기로 한 거잖아요.  
A : 네.  
B :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과에서 하시니까 거기랑 의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핸들링을 내가 뭐 해라라고 지침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계세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A : 아, 요새  
B : 예, 예, 예.  
A : 그, 저희한테 용역 하라는 게 매일 막 하루에  
B : 그렇죠.  
A : 몇 건씩 쏟아지거든요.  
B : 예, 예, 예.  
A :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하라고 그러고.  
B : 예, 예, 예~ 아 맞아요.  
A : 제가 D 과장님하고,

B : 네, 네, 네.

A : 요새 거의 매일 말다툼을 해요. 그거,

B : (웃음)

A : 아니 그거를 그냥 말로다가만 시키면 어떡하십니까, 문서를 하나 주세요.

B : 아~

A : 그래야 우리도 그걸 뭐 수의 계약이든 뭐든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국토부 돈을 가지고는 있지만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LH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대통령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임시 개방, 임시, 그러니까 저희도 아, 뭔가 국토부에서 **[REDACTED]** 과는 어느 한쪽에서 그냥, 그냥 뭐 VIP 행사라고 표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임시 개방 행사와 더불어가지고 뭐,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초청하는 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B : 그러니까 부장님

A : 네.

B : 그거는 저랑 얘기하실 게 아니고 만약에

A : (한숨)

B : 해결이 안 되시면 단장님께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A : 아, 참.

B : 제 선에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A : 아니

B : 예, 예.

A : 왜, 왜 과장님 선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B : 예.

A :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과장님 쪽에서 **[REDACTED]**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깐 LH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쓰자. 아니었나요?

B : 아니 근데 국장님의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장님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국장님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지침을 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A : (한숨) 알겠습니다.

B : 이게 저희 이렇게 들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A : (한숨) 예, 예.

B : 제가 어떤 가이드나 그걸 줄 입장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상황도 잘 몰라요. 뭐, 위탁이나 이런 거를. 저희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A : 아니 그러면,

B : 예, 예.

A : 근데 과장님 만약에 LH, LH나 **[REDACTED]** 과에서 돈이 없어서 만약에 못하겠습니다. 그냥 **[REDACTED]** 과에서 알아서 하십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였죠?

B : 못할 수도 있었고, 모르겠네요. (웃음)

A : 아유, 그거를 (한숨)

B : 그러니까

A : 알겠습니다.

B : 부장님.

A : 네, 네, 네.

B : 예, 그냥 단장님한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뭐,

A : 우리 단장님이요? 우리 단장님이요?

B : 아니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A : 아, 국장님? 국장님한테?

B : 예, 예, 예, 예.

A : 예, 예, 예.

B : 만약에 뭐, 저는 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A : 네, 네.

B : 예.

A : 네, 제가 그럼, 먼저 D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안 되면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걸로다가 한 번 다시 해볼게요.

B :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권한이 없어요.

A : 아니 예산이 아니라,

B : 예, 예, 예, 예.

A : 예산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행사를 LH 보고 잘 추진을 하라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B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산 관련 얘기잖아요.

A : 돈을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B : 예산 관련 얘기잖아요.

A : 그러니까

B : 그러니까 그,

A : 아니 예산은 LH가 金단, 金단의 朴과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장군 숙소 리모델링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B : 아이, 그러니까 부장님

A : 네.

B : 그거를 그냥 朴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A : 네.

B :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그 상황도 모르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A : 알겠습니다, 과장님.

B : 네.

A : 네, 수고하세요.

자료: A 임의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7]

A-D 통화 녹취록(2022. 6. 3.)

D :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담당 주무관이나 사무관도 부담스러워서 그걸 못 보내 그,  
그, 저기요?

A : 아니 근데,

D : 못 보낼, 못 보낼 것 같아요.

A : 그,

D : 제가 보니까.

A : 그걸 부담스러워서 못 보내면 돈을 쓰는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죠?

D :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A : 아니 그러니까 서로,

D : 제가 생각하기에는

A : 서로 안 다치게 하려면, 그냥

D :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지금

A : 네.

D : 어디에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뭐

A : 아, 근데 우리는

D : 내부 방침을 내부, 내부 방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A : 네.

D : 예?

A : 네.

D : 저희 실무자들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보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 : 아니 뭐, 그러면 어떻,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약을

D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A : 계약은 해야 되는데, 계약에 대한 근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D : 그러니까 방법은 저희가 시범 개방 관련해서

A : 네.

D : 여러 가지 그, 한 그, 문구 넣어서 보낸 게 있잖아요? 일단 그걸로 근거해서

A : 아니 시범 개방은

D : 나중에 그,

A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 : \*\*\*

A : 시범 개방하고 VIP 행사는 전혀 별 건이라고요.

D :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아는데. 저희도 그게 뭐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것도 없고, 예? 저희 담당자들은 어떻게 보내냐고요. 그거를.

A : 아니 국토부가

D :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지금 \*\*\* 안 주시면.

A : 문서를 안 주는데 LH는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D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나

A : 예?

D : LH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A : 그래서 제가 문서에, 문서로다가, 문서 초안까지 만들어 드리잖아요. 문서 초안에 행사는 연기가 됐고 이건 누가 다칠 일 없잖아요. 그다음에 임시 개방에 따른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번 시범 개방과 별도로 어린이와 지역 소상공인과의 화합의 행사를 개최, 추가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다가 보내주시면 나중에 언론 보도 나올 거 아니에요.

D : 그러니까 그걸 한번 AD 사무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A : (한숨) 알겠습니다.

D : 네, 네, 네.

자료: A 임의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8]

## 1·2차연도 당초원가계산서 및 수정원가계산서 비교

(단위: 원)

구분	비록	당초원가계산서 명세		수정원가계산서 명세	
		내용	승인금액	증감금액	수정승인금액
1차년도	재료비(A)	외주비용	537,067,791	-	537,067,791
	노무비(B)	자체인력	83,517,121	-	83,517,121
	경비(C)	직접 수행한 경비	29,605,101	-	29,605,101
	소계(D)	A+B+C	650,190,013	-	650,190,013
	일반관리비(E)	(A+B+C)×8%	52,015,201	-	52,015,201
	이윤(F)	(A+B+C)×10%	65,019,001	-48,505,259 <sup>1)</sup>	16,513,7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G)	별도 산정	6,673,500	-	6,673,500
	사후원가검토수수료(H)	별도 산정	8,000,000	-	8,000,000
	계(I)	D+E+F+G+H	781,897,715	-48,505,260	733,392,456
	부가가치세(J)	I×10%	78,189,771	-4,850,525	73,339,245
	<b>총원가</b>	I+J	860,087,486	<b>-53,355,785</b>	806,731,701
2차년도	재료비(A)	외주비용	3,237,080,541	-	3,237,080,541
	노무비(B)	자체인력	1,944,698,208	-122,757,767	1,821,940,441
	경비(C)	직접 수행한 경비	1,006,882,147	-	1,006,882,147
	소계(D)	A+B+C	6,188,660,896	-122,757,767	6,065,903,129
	일반관리비(E)	(A+B+C)×8%	495,092,871	-9,820,621	485,272,250
	이윤(F)	(A+B+C)×10%	618,866,089	-287,456,606 <sup>2)</sup>	331,409,4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G)	별도 산정	14,832,382	-	14,832,382
	사후원가검토수수료(H)	별도 산정	30,000,000	-	30,000,000
	계(I)	D+E+F+G+H	7,347,452,238	-420,034,994	6,927,417,244
	부가가치세(J)	I×10%	734,745,223	-42,003,499	692,741,724
	<b>총원가</b>	I+J	8,082,197,461	<b>-462,038,493</b>	7,620,158,968

주: 1. (B+C+E)×10%, 이윤항목에서 재료비(A, 외주용역비) 제외 후 일반관리비(E) 추가

2. (B+C+E)×10%, 이윤항목에서 재료비(A, 외주용역비) 및 과다 산정된 노무비 제외 후 일반관리비(E) 추가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9]

## 2차연도 시설관리과업의 노무량 및 노임단가 산정 당초자료 및 수정자료 비교

(단위: 일, 원)

구분 <sup>1)</sup>	이름 <sup>2)</sup>	직종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1~2월			
			당초		정당		당초		정당		당초		정당	
			노 무 량	노 임 단 가										
시설	-	작업반장	181	131,369	131	184,378	31	133,812	31	127,166	0	0	0	0
	AE	안전관리사	181	131,369	127	169,731	123	133,812	23	202,284	60	132,915	43	184,077
	-	작업반장	0	0	0	0	76	133,812	53	190,927	60	132,915	39	194,498
	-	안전관리사	0	0	0	0	42	133,812	26	168,110	60	132,915	42	174,117
	-	작업반장	0	0	0	0	153	133,812	94	190,927	60	132,915	46	194,498
	-	안전관리사	157	131,369	106	157,634	184	133,812	124	159,340	0	0	37	183,068
	-	안전관리사	181	131,369	125	144,665	182	133,812	123	144,668	0	0	0	0
	-	안전관리사	181	131,369	126	141,132	184	133,812	119	152,333	0	0	0	0
	-	작업반장	181	131,369	123	184,378	123	133,812	78	190,927	0	0	0	0
	AF	안전관리사	0	0	0	0	0	0	0	60	132,915	45	177,072	
미화	-	안전관리사	0	0	0	0	0	0	0	60	132,915	4	118,987	
	-	단순노무	97	131,369	67	121,293	184	133,812	122	124,767	60	132,915	41	130,035
	-	단순노무	4	131,369	4	66,470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153	133,812	123	103,945	60	132,915	41	120,459
	-	단순노무	182	131,369	134	104,611	184	133,812	123	117,403	60	132,915	41	120,365
	-	단순노무	1	131,369	1	78,570	0	0	0	0	0	0	0	0
	-	작업반장	0	0	0	0	118	133,812	76	183,597	60	132,915	41	183,366
	-	단순노무	30	131,369	22	108,144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47	131,369	30	117,004	82	133,812	57	107,284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2	133,812	2	48,400	0	0	0	0
	-	작업반장	90	131,369	62	184,378	31	133,812	16	190,927	0	0	0	0
	-	단순노무	3	131,369	3	68,686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182	131,369	126	124,348	184	133,812	129	133,812	60	132,915	38	133,393
	-	단순노무	0	0	0	0	31	133,812	21	83,013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72	133,812	51	112,061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55	133,812	43	96,200	31	132,915	17	133,393
	-	단순노무	76	131,369	49	115,376	184	133,812	124	119,412	60	132,915	41	120,459
	-	단순노무	60	131,369	40	120,191	74	133,812	49	118,773	0	0	0	0
	-	단순노무	104	131,369	70	121,611	184	133,812	123	125,166	60	132,915	41	130,505
	-	작업반장	92	131,369	61	184,378	19	133,812	13	190,927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1	133,812	1	66,470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25	133,812	17	118,594	0	0	0	0
	-	단순노무	47	131,369	33	101,660	126	133,812	85	122,201	0	0	0	0
	-	단순노무	32	131,369	21	107,964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0	131,369	41	109,492	31	133,812	23	98,610	0	0	0	0
	-	단순노무	8	131,369	7	75,965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90	131,369	62	104,017	31	133,812	27	87,987	0	0	0	0
	-	단순노무	30	131,369	22	103,605	0	0	0	0	0	0	0	0
	-	작업반장	182	131,369	143	184,378	62	133,812	43	190,927	0	0	0	0
	-	단순노무	11	131,369	7	100,408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57	133,812	37	80,625	0	0	0	0
	-	단순노무	38	131,369	24	122,935	72	133,812	51	107,181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52	133,812	35	114,577	60	132,915	41	130,808
	-	단순노무	4	131,369	4	66,470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0	0	0	60	132,915	41	120,459	
	-	단순노무	0	0	0	0	0	0	0	60	132,915	38	133,393	
	-	단순노무	0	0	0	0	0	0	0	2	132,915	2	68,090	
	-	단순노무	0	0	0	0	0	0	0	3	132,915	3	72,783	

구분 <sup>1)</sup>	이름 <sup>2)</sup>	직종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1~2월			
			당초		정당		당초		정당		당초		정당	
			노 무 량	노임 단가										
보안	-	단순노무	92	131,369	64	131,369	184	133,812	132	133,812	60	132,915	41	133,393
	-	단순노무	0	0	0	0	81	133,812	56	133,812	60	132,915	39	133,393
	-	단순노무	0	0	0	0	65	133,812	44	133,812	0	0	0	0
	-	단순노무	111	131,369	78	131,369	158	133,812	127	133,812	60	132,915	41	133,393
	-	단순노무	32	131,369	24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38	131,369	29	129,128	184	133,812	128	133,812	60	132,915	42	133,393
	-	단순노무	57	131,369	29	120,453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32	131,369	24	112,257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15	133,812	10	133,812	0	0	0	0
	-	단순노무	97	131,369	68	131,369	184	133,812	130	133,812	60	132,915	42	133,393
	-	작업반장	125	131,369	88	166,494	93	133,812	58	190,927	0	0	0	0
	-	단순노무	23	131,369	17	122,625	181	133,812	132	133,812	0	0	0	0
	-	단순노무	7	131,369	6	99,985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53	131,369	38	131,369	68	133,812	49	133,812	0	0	0	0
	-	단순노무	81	131,369	57	131,369	126	133,812	88	133,812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41	133,812	29	133,812	0	0	0	0
	-	단순노무	94	131,369	62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	131,369	4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141	131,369	96	131,369	184	133,812	127	133,812	0	0	0	0
	-	단순노무	11	131,369	8	112,496	184	133,812	129	133,812	60	132,915	42	133,393
	-	단순노무	37	131,369	26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52	131,369	38	129,682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59	131,369	20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44	131,369	31	131,369	184	133,812	129	133,812	60	132,915	42	133,393
	-	단순노무	77	131,369	54	95,712	0	0	0	0	0	0	0	0
	-	작업반장	0	0	0	0	92	0	53	190,927	0	0	0	0
	-	단순노무	53	131,369	38	131,369	184	133,812	128	133,812	60	132,915	40	133,393
	-	단순노무	111	131,369	80	131,369	184	133,812	129	133,812	60	132,915	41	133,393
	-	단순노무	16	131,369	12	112,496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1	131,369	44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19	131,369	15	65,330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32	131,369	24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174	133,812	121	133,812	60	132,915	43	133,393
	-	단순노무	49	131,369	35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111	131,369	77	131,369	184	133,812	130	133,812	0	0	0	0
	AH	단순노무	11	131,369	9	108,883	0	0	0	0	0	0	0	0
	AG	작업반장	111	131,369	79	158,849	184	133,812	131	161,540	60	132,915	42	178,745
	-	단순노무	1	131,369	1	89,080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2	131,369	2	85,700	0	0	0	0	0	0	0	0

구분 <sup>1)</sup>	이름 <sup>2)</sup>	직종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1~2월			
			당초		정당		당초		정당		당초		정당	
			노 무 량	노임 단가										
5단지 시설	-	안전관리사	15	131,369	10	151,790	0	0	0	0	0	0	0	0
	-	안전관리사	15	131,369	10	151,790	0	0	0	0	0	0	0	0
	-	안전관리사	15	131,369	10	175,819	0	0	0	0	0	0	0	0
	-	안전관리사	15	131,369	10	151,790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15	131,369	10	123,756	0	0	0	0	0	0	0	0
	-	안전관리사	15	131,369	10	151,790	0	0	0	0	0	0	0	0
	-	작업반장	15	131,369	10	184,378	0	0	0	0	0	0	0	0
	-	안전관리사	15	131,369	10	188,942	0	0	0	0	0	0	0	0
5단지 미화 및 경비	-	단순노무	61	131,369	43	129,427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1	131,369	43	129,427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1	131,369	44	126,485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1	131,369	44	126,485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1	131,369	30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1	131,369	31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1	131,369	31	131,369	0	0	0	0	0	0	0	0
	-	단순노무	61	131,369	30	131,369	0	0	0	0	0	0	0	0
분수 정원 시설	-	안전관리사	0	0	0	0	88	133,812	54	201,297	0	0	0	0
	AE	안전관리사	0	0	0	0	61	133,812	98	75,288	0	0	0	0
	AF	안전관리사	0	0	0	0	136	133,812	93	169,297	0	0	0	0
분수 정원 미화	AH	단순노무	0	0	0	0	139	133,812	99	122,996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138	133,812	96	126,000	0	0	0	0
	-	단순노무	0	0	0	0	7	133,812	8	107,767	0	0	0	0
	AG	단순노무	0	0	0	0	69	133,812	47	117,057	0	0	0	0

주: 1. 5단지 시설의 경우 2023년 3월, 5단지 미화 및 경비의 경우 2023년 3~5월, 분수정원 시설 및 미화는 8~12월 과업 수행

2. AE, AF의 경우 일반 시설업무와 분수정원 시설업무에 중복 투입되었고, AH와 AG의 경우 일반 미화업무와 분수정원 미화업무에 중복 투입되어 총 106명의 근로자가 투입됨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